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세행정의 변화

2000. 12.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정보기술의 발달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체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다. 조세행정에서 정보기술의 도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조세행정은 투명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탈세 등과 같은 우리나라 조세행정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세행정에서의 정보기술의 도입은 행정비용과 납세준용비용을 감소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투명성의 확보를 통한 탈세의 방지, 투입비용의 절감,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은 우리나라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에 정보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시기는 ‘국세통합전산망’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1995년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국세행정과 정보기술의 접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한 그 효과가 얼마나 발휘되고 있는지 연구·분석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세무당국에서도 조세행정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세자료의 확보는 투명하고 공평한 세무행정을 펼치는 데 필수요소이다. 인터넷, 컴퓨터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조세행정은 이러한 과세자료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한 조세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 조세행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999년부터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국세행정개혁이 지속적이며, 성공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국세행정개혁을 추진하는 세무당국에서 정보기술과 국세행정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본원의 현진권, 정재호 박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저자들은 본 연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연구초안에 대해 국세청의 차삼준 선생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관련 담당자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또한 원내 세미나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홍범교 박사 및 참석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자료수집 및 원고정리에 수고한 김용대 주임 연구원, 이주희 연구원, 윤혜순 연구조원 그리고 출판과 직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담긴 내용은 집필자 개인들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0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유 일 호

目 次

I. 서 론	9
II. 정보기술의 발달추세 및 국세행정의 변화	14
1. 정보기술의 발달추세	14
가. 정보화의 추세	14
나. 정보기술에 대한 수요	17
2. 정보기술과 국세행정의 변화	19
가. 국세청의 전산화 연혁	19
나. 전산조직 및 운영의 변천	23
다.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28
라. 전자세정의 향후계획	32
III. 정보기술이 국세행정에 미친 경제적 효과	36
1. 생산관계 분석을 통한 정보기술의 효과분석	36
가. 국세행정의 성과지표 추이	36
나. 분석모형	42
다. 분석결과	46
2.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평가	48
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시행효과	50
나. 국세채납자 정보공개의 효과	53
IV. 외국의 전자세정	58
1. 미국의 전자세정	58
가. 전자세정 도입 목적	59

나. 전자세무행정의 현황	61
다. 전자세정의 과제	68
2. 호주의 전자세정	72
가. 전자신고 제도	74
나. 전자지불 시스템	81
다. 전자정보 서비스	83
3. 뉴질랜드의 전자세정	87
가. 개요	87
나. 근로소득 원천신고(PAYE: 즉시지불제도)	88
다. 전자신고	89
라. 콜센터(Call Centre)	91
마. 컴퓨터 세무조사(Computer Tax Audit)	93
바. E-File	97
V. 조세행정의 정책과제	99
1.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	99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보완	101
가. 개인정보보호와 과세자료와의 관계	101
나. 과세자료에 대한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	103
3. 추가적인 과세자료의 확보: 인별 전화번호 자료	104
4. 추가적인 과세자료의 확보: 공공부문의 지출자료	106
VI. 결 론	108
참고문헌	111
<부록 I>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4
<부록 II>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부록 III>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3조 관련)	124

表 目 次

<표 II-1> 정보화 지수의 국제비교(I)	16
<표 II-2> 정보화 지수의 국제비교(II)	16
<표 II-3> 한국의 정보수요 추이	18
<표 II-4> 단계별 국세청 전산화 주요내용	24
<표 II-5> 전산요원 현황	26
<표 II-6> 전산요원 비중 및 PC 보급률	27
<표 II-7> 전산장비 도입 추이	27
<표 II-8> 전산자료 처리실적	29
<표 II-9> 국세통합시스템의 체계 및 목표	31
<표 II-10> 국세정보화 추진의 목표와 기대효과	32
<표 II-11> 국세청 전자세정을 위한 주요 추진내용	35
<표 III-1> 국세행정 성과지표의 유형	37
<표 III-2> 국세행정의 산출성과지표	38
<표 III-3> 국세행정의 투입지표	41
<표 III-4> 분석자료의 요약통계치	46
<표 III-5>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47
<표 III-6> 정규화된 모형으로 전환된 추정결과	48
<표 III-7> 복권제 시행 이후 재화·용역거래 신용카드 사용 증가추세	51
<표 III-8> 신용카드 가맹점 및 이용금액 현황	52
<표 III-9> 자료제공대상 출력 및 제공현황	54
<표 III-10> 체납세금 징수현황	55
<표 III-11> 세목별 체납세금 징수현황	56
<표 IV-1> 중기 및 장기적 목표	60

<표 IV-2>	장기목표와 중점 추진전략	62
<표 IV-3>	미국 국세청 개인납세자 전자신고 현황	64
<표 IV-4>	미국의 개인소득세 신고 중 전자신고 비중	65
<표 IV-5>	미국 국세청의 기업을 위한 전자신고 도입 내용	66
<표 IV-6>	기업의 전자신고 실적	67
<표 IV-7>	전체 인구 대비 호주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	74
<표 IV-8>	전자 신고 이용 현황	80
<표 IV-9>	ATO 홈페이지 관련 설문 조사(2000년 6월)	84
<표 IV-10>	전화 상담 관련 설문 조사(2000년 6월)	86
<표 V-1>	공공부문의 소비지출 구조	107

圖 目 次

[그림 III-1]	징수세액 1백원당 징세비	39
[그림 III-2]	10만명당 소송건수	39
[그림 III-3]	100만명당 조세범칙 조사건수	39
[그림 III-4]	납세자 수 1천명당 세무공무원 수	42
[그림 III-5]	납세자 수 1천명당 사업비	42
[그림 IV-1]	뉴질랜드의 새로운 세무신고 제도	90

I. 서론

조세행정에서 정보의 역할은 매우 크다. 조세행정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납세자와 세정당국 간의 게임의 결과로 평가하는 접근법이 경제학에서는 활발하게 이용된다¹⁾. 즉, 납세자와 세정당국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상적인 조세행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적 왜곡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에서 거론되고 있는 많은 정책현안들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정보에 있어서 납세자가 세정당국보다 우위에 있음으로 하여 야기되는 문제로 과표누락을 들 수 있다. 세정당국이 특정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이들 계층에 대한 탈세와 다른 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반면 납세자들이 조세제도 및 행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납세협력비용과 세무부조리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²⁾.

조세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세제도에 따라 개별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는 것이다³⁾. 이를 위해서는 세무당

-
- 1) 세무행정에서 세무조사와 탈세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Allingham and Sandmo(1972)에서 출발하였으며, 종합적으로 설명한 Alm(1999)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 2)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현진권과 윤건영(1999), 현진권 외(1999)를 참고하기 바란다.
 - 3) 조세정책에서 조세행정의 중요성 및 개혁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Bird(1991), James and Wallschutzky(1995), Tanzi and Pellechio(1995) 등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국과 납세자들 간에 서로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 이러한 비용이 상당히 높을 경우 완전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

조세행정에서 납세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행정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행정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세무조사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99년에 시작된 국세행정개혁의 기본방향은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축적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세무조사에 중점을 두는 행정체계를 갖는 것이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제 및 세정은 매우 어려운 전문분야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용이하지 않아 비교적 높은 납세협력비용을 치르게 된다. 납세자 입장에서 이러한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조세행정의 전략적 목표는 세무당국과 납세자간에 서로에 대한 정보를 갖추도록 하되, 정보를 갖는데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세무당국이 납세자별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어 행정비용이 낮아야 하고, 또한 납세자들이 조세제도 및 행정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납세협력비용도 최소화되어야 한다⁴⁾. 이러한 행정비용과 납세협력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도입이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행정에서도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의 조세행정체계에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점차로 보여주고 있다. 즉, 과세관련

4) 대표적인 조세비용으로 조세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들 수 있다. 곽태원(1994)은 조세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정한 연구로 들 수 있다.

자료 확보와 과세기반의 파악에 소요되는 높은 행정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세행정체제도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관련 정보파악 및 신고에 따른 납세순응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정보기술의 도입은 조세행정에서 행정비용 및 납세순응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모두 낮출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국세행정에서 정보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변화 및 정보기술이 국세행정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국세행정의 투입요소와 산출물간의 생산관계를 분석하며, 특히 공공부문의 산출물은 일반적으로 복수이므로 다수의 산출물이 있는 경우의 생산함수를 상정하여 이를 모형화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76년부터 1997년까지 22년간의 연간 시계열자료이다. 정보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졌으나,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의 도입과 더불어 1999년부터 대대적인 국세행정개혁이 추진 중이고 전자납세신고제도가 부분적으로나마 2000년부터 시작되는 등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포함한 시계열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정보기술의 발달 효과를 최대한 가시적으로 나타내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 도입의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수립을 위한 대안제시는 현시점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관련자료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정부의 타 기관들에서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 동안 조세관련자료가 국세청에 제공되는 것이 제도화되지 않아 자료 확보에 소요되는 국세행정비용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에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

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은 국세청이 타 기관들의 자료를 제도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시행한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이 정보측면에서의 역할과 정보기술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조세행정은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을 포괄한 조세전반에 걸친 행정적인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조세행정 중에서 국세행정이나 지방세행정 간에는 그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같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이 조세행정에 어떻게 응용되고 적용되는지를 밝히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포함한 조세전반에 관한 고찰이 아닌 정보기술이 이제까지 접목된 분야인 국세분야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지방세의 경우는 이제 막 정보기술과 지방세 행정을 접목시키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결국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주로 국세를 위주로 할 것이며, 차후 지방세 행정에서도 정보기술과의 접목이 이루어지면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차기 연구과제로 돌린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의 발달 추이를 살펴보고, 조세행정에서 정보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국세청 개칭 이후 정보기술 수준의 발전에 대해 연도별로 고찰한 후 변화의 추이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효율성이 정보기술의 변화로 인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생산관계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또한 1999년 국세행정개혁에서 정보기술측면의 공헌도를 살펴보고, 그 효과를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국세행정부문에 정보기술을 일찍부터 도입하여 조세행정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선진국들 중에서 미국, 호

주, 그리고 뉴질랜드의 전자세정 대한 현황을 고찰하고 그 시사성을 살펴본다. 제V장에서는 정보기술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 국세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제도적인 정책과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여 효율적인 국세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시사성을 제시한 후, 제VI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짓는다.

II. 정보기술의 발달추세 및 국세행정의 변화

1. 정보기술의 발달추세

가. 정보화의 추세

지금까지의 조세행정에서는 세무당국과 납세자들이 서로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므로 현실화될 수 없었다. 이는 완전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기술이 세무당국과 납세자들에게 완전히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환경변화로 개방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기존의 패러다임이 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조세행정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가장 민감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⁵⁾. 과거의 낡은 정보기술 체계하에서는 납세자들이 특정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비용이 수반되었으므로 정보 보급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이 점차로 발전함에 따라 납세자들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통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고 또한 별다른 비용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조세행정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조세정책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기술개발로 인한 조세행정의 변화 및 조세정책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영훈, 홍범교, 연태훈(1999), Baldwin(1996), Bonnet(1998), Fox(1997), Jenkins(1996) 등을 들 수 있다.

세계는 정보화라는 구조변화를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정보화는 정보기술의 보급과 사회구성원들의 정보 이용실태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좁은 국토, 정보화에 대한 높은 수요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화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산원이 정보화지수를 작성하여 '국가정보화백서'에 발표하고 있다. 정보화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사회의 한 분야에 대해 너무 치우치면, 그 결과는 현실과 괴리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화를 설비, 이용, 정보화 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정보설비지표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급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이 용지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보서비스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정되었다. 또한 정보화 지원지표는 정보를 위한 투자와 정보화 관련 인원이 향후 국가정보화를 주도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한 나라의 정보화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간접방법이 국제간 비교이다. 현재 정보화에 대한 국제비교로서 대표적인 연구로 한국전산원(1997)과 문춘걸과 나성린(1999)을 들 수 있다.

<표 II-1>, <표 II-2>는 우리나라 정보화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정보화를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한국전산원에서는 국가별 정보화 지수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전산원 발표자료는 정보화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개별 구성요소들의 가중치를 주관적으로 처리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분석결과도 일반적인 직관과 대치되는 국가들이 있다. 문춘걸과 나성린(1999)은 가중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과정을

<표 II-1> 정보화 지수의 국제비교(I)

(단위 : %)

국가명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평균 증가율
한 국	70	86	100	123	159	249	391	742	40.2
미 국	688	794	952	1,258	1,669	2,342	3,200	5,350	34.0
영 국	567	610	645	693	899	1,317	1,756	3,263	28.4
독 일	385	413	511	716	1,095	1,737	2,354	4,693	42.9
프랑스	938	1,085	1,203	1,331	1,568	1,890	2,270	3,019	18.2
일 본	332	373	477	641	833	1,078	1,422	1,926	28.5
대 만	145	163	182	212	264	334	430	555	21.2
싱가폴	569	645	738	850	1,053	1,272	1,703	2,400	22.8
홍 콩	620	691	869	1,017	1,075	1,381	1,674	2,167	19.6

자료 : 한국전산원, 『1997년 국가정보화 백서』, 1997.

<표 II-2> 정보화 지수의 국제비교(II)

(단위 : %)

국가명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평균 증가율
한 국	63	82	100	120	147	178	244	339	27.0
미 국	930	993	1,052	1,101	1,152	1,175	1,193	1,200	3.7
영 국	496	545	593	653	785	920	1,012	1,141	12.6
독 일	292	334	422	553	673	776	896	1,079	20.5
프랑스	382	437	518	579	699	775	926	1,052	15.6
일 본	43	562	663	752	841	911	996	1,095	12.1
대 만	109	138	180	215	264	315	386	489	23.9
싱가폴	87	120	171	239	314	417	541	728	35.6
홍 콩	168	225	297	393	524	671	836	1,022	29.4

자료 : 문춘걸, 나성린(1999).

거쳤으며, 일반적인 직관과 일치하므로 이 결과를 이용하도록 한다.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증가하는 속도는 싱가포르, 홍콩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향후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보기술에 대한 수요

우리나라의 정보기술과 정보수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 먼저 정보기술의 보급을 개인용 컴퓨터 보급대수를 통해 살펴보면, 1990년에 인구 1백명 당 3.7대에서 1997년에 15대로 5배 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기술 장비의 증가율보다 정보에 대한 수요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를 보면, 1996년 및 1997년에 전년 대비 130% 정도 증가하는 엄청난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요의 증가가 조세행정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치·경제·사회 등 전분야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현재까지도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욱 혁신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빠른 확산은 전세계를 동시 정보권으로 묶어 가고 있으며, 모든 분야가 이에 맞추어 따라가기에 정신이 없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등장은 기존의 상거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상거래 방식의 출현이 가능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간의 경제행위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 및 사회변화의 예측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의 발달은 과거에는 시행하기 어려웠던 것을 가능

<표 II-3> 한국의 정보수요 추이

(단위 : 대, 명, %)

	정보장비수요		정보수요	
	1백명당 PC 보급수	전년 대비 증가율	1천명당 인터넷 이용자수	전년 대비 증가율
1990	3.72	-	-	-
1991	4.53	21.8	-	-
1992	5.68	25.4	-	-
1993	6.84	20.4	-	-
1994	8.64	26.3	1.76	-
1995	10.77	24.7	2.84	61.4
1996	13.17	22.3	6.54	130.3
1997	15.07	14.4	15.22	132.7

자료 : Yearbook of Statistics, *Telecommunication Services Chronological Time Series*.

Internet Industry Almanac, *Computer Industry Almanac Inc.*

하게 해 주고 있다. 특히, 조세행정에 있어서도 과거에 인력으로는 도저히 실시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실시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과세자료를 집중시켜 행정업무를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납세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의 대부분을 과세자료 처리 업무에 치중하던 것을 전산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절약된 시간을 세무조사업무나 납세자서비스 업무에 할애함으로써 성실신고납부 수준과 납세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2. 정보기술과 국세행정의 변화

가. 국세청의 전산화 연혁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민소득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국세행정 업무도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게 되었고 업무의 질에 있어서도 복잡하고 다양화되었다. 국세청 발족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기장을 하지 않아 추계과세가 불가피하였고 이로 인하여 납세자들과 세정당국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국세청은 ‘과세자료에 의한 근거과세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보고의무제도를 강화하여 모든 거래자료를 양성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처리하여야 할 거래자료의 폭주로 원래 의도하였던 근거에 의한 부과결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력으로만 자료를 처리하여 적기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세행정 전산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세행정의 전산화는 1966년 3월 3일 국세청 개청 이듬해인 1967년부터 시작되었다. 국세청 업무의 전산화 및 정보화는 크게 다섯 구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제1기는 전산시스템의 도입준비기, 제2기는 과세자료처리 중심의 전산개발기, 제3기는 전산처리 업무영역의 확대기, 제4기는 사무관리자동화 등 세정혁신기, 마지막으로 제5기는 국세통합시스템(Tax Integrated System)의 도입에 따른 세정전산화로 기능별 조직 정착의 기반구축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표 II-4> 참조)⁶⁾. 그러나 실질적인 조세행정의 전산화는 제5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전 단계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컴퓨터의 도입을 통하여 과세자료의 입력 및 처리를 시행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1월 국

6) 제1단계~제4단계는 『국세청 30년사』에서 인용, 제5단계는 필자가 구분하였다.

세통합시스템의 개통으로 국세업무를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지방청이나 세무서의 과세자료가 국세청으로 집중되도록 하여 인별·기업별 과세자료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3~4년간 축적된 자료는 조세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귀중한 연구자료로써 이용될 것이며,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탈세 및 소득금액의 축소보고 등 각종 세무부조리의 근원을 일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서비스의 제공, 국세통합시스템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제1기: 전산 시스템 도입 준비기(1967~1970)

이 시기는 국세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컴퓨터 이용의 불가피성과 그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제반조치들을 수행하기 시작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전산화의 타당성·가능성을 조사하고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 및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전산시스템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전산화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발족시켜 전산요원을 확보하는 한편, 전산기술 향상에 전력을 다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 제2기: 과세자료 처리중심의 전산개발기(1971~1981)

국세행정상 처음으로 법정 보고자료인 판매·지급자료 등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적절한 활용을 하였다. 과세자료는 매월 방대한 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인력으로는 적기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전산처리하여 자료처리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산처리의 초기에 있어서는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자료의 발생이 과다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전산처리방법과 전산의식의 개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전면적인 종합소득세제와 부가가치세제의 시행으로 세정운영 전반에 걸쳐 변혁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소득자료와 세금계산서를 전산처리 함으로써 새로운 세제의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었다. 즉, 컴퓨터가 납세자의 인별·가구별 소득의 합산과 사업자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상호대사를 처리하고, 소득거래의 자료제출 누락을 추적하여 신고와 부과결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료를 전산출력 함으로써, 과세자료 처리중심의 일괄처리방식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또한 입력자료량의 대폭적인 증가는 지방청 전산실의 설치와 신종 컴퓨터의 도입 등 전산실의 규모확대를 가속화시켰다.

세무서 업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법원 등기자료 복사업무인 등기신청서 부분을 전산처리 함으로써 재산세 자료의 전산화가 이루어졌다.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결정 및 신고안내가 자동화 되어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전산화의 방향은 과세자료의 처리로 근거과세의 실현을 지원함과 함께 수작업 축소 등 일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3) 제3기: 전산처리 업무영역의 확대기(1982~1992)

과세자료 처리중심에서 컴퓨터의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산세정제도의 확립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국세행정 전산화 5개년 계획을 2차에 걸쳐 수립·시행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산화 발전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전산망의 구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이다. 국세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국세행정 데이터베이스가 누적되어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각 세무서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세무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즉, 일괄처리방식(Local batch processing system)의 컴퓨터 활용 방식에서 즉시처리방식(On-line real time processing system)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의 전환으로 대국민 납세서비스의 질과 편의 제공의 수준도 향상될 수 있었다. 세금관련 제 증명의 발급, 세무신고 안내, 질의응답 등의 민원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점차 동 업무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각 일선세무서에서 즉각적으로 과세자료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세무 종사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이나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인드 자체의 변경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종사원들의 컴퓨터 조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도 역점을 두었다.

4) 제4기: 사무관리 자동화 등 세정혁신기(1993~1996)

이 시기에는 매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세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세정수요를 종래의 거래자료 처리중심의 전산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해오던 국세청은 1993년 금융실명제의 전면실시를 계기로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만 3년 동안 구축을 완료하고 1997년 1월 전면시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시스템은 세정업무전반에 걸쳐 사무관리의 자동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종사직원의 업무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정확한 세원관리와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세정보의 인별 종합관리와 다양한 검색체계의 구축으로 공평과세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담당자에 의존하던 세원관리 방식이 조직 및 관리자에 의한 방식으로, 세목별 조직에서 조사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5) 제5기: 국세통합시스템(TIS)의 도입에 따른 세정전산화로 기능별 조직 정착의 기반구축(1997~1999)

새로운 전산기술의 도입을 세정에 실질적으로 접목시키고 선진세정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진정으로 마련된 시기는 1997년 1월의 국세통합시스템(TIS)의 개통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세통합시스템의 개통 및 활용은 1999년 9월에 시작한 국세행정개혁에 따른 기능별조직으로의 조직개편과 선진세정을 구축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인터넷 환경이 급속하게 향상되었고,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의 공유와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무정보서비스의 제공이 당연과제로 부각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실제 세무서를 방문한 것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999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크게 조세제도 및 세정에 대한 정보, 세무서 업무, 조세정책 및 행정에 대한 의견제공, 기타관련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국민 납세홍보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인트라넷을 도입, 지식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정부의 구현에 동참하였다. 인트라넷은 국세행정개혁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개통되었으며 이는 국세공무원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기능별 조직개편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나. 전산조직 및 운영의 변천

1) 전산실 조직의 변천

1967년 8월 잠정적인 임시기구로 시작된 국세청 전산실은 1969년 9월 계에서 과로 승격되었고, 1974년 12월에는 국으로 다시 승격되어 국세행정에 있어 전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한 자리매김을 하였다. 1997년말 이후 현재 전산기획, 전산운영, 정보개발1, 정보개발2로 크게 4부문 담당으로 나누어져

<표 II-4> 단계별 국세청 전산화 주요내용

	기간별 주요내용	기간
제1기	<p>전산시스템 도입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기구의 발족 및 전산요원의 확보 - 전산화의 타당성·가능성 조사, 시스템 설계 및 프로그램 작성·테스트 등 전산화 시스템 결정 - 컴퓨터와 입력장치의 기종선정 	1967~1970
제2기	<p>과세자료 처리 중심의 전산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보고자료인 판매·지급자료 등 과세자료를 최초로 전산처리 - 소득자료와 세금계산서의 전산처리 - 등기신청서 부분 전산처리로 재산계세자료의 전산화 	1971~1981
제3기	<p>전산처리 업무영역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소비세, 주세사무, 납세자 세적관리, 징수사무 등의 자동화 - 국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무서에 단말기 설치 - 세금관련 제 민원증명의 발급, 세무신고 안내, 질의·응답 등 전산화 - 일선직원의 PC조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전국적 확산 	1982~1992
제4기	<p>사무관리 자동화 등 세정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개통 준비작업 - 개발업무 강화를 위한 전산실 조직의 확대·개편 	1993~1996
제5기	<p>국세통합시스템(TIS)의 도입에 따른 세정전산화로 기능별 조직 정착의 기반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전자신고 확대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시스템 도입 · 전산매체 신고 확대 · 인터넷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 및 세무관련 서식 제공 - 전산출력 과세자료 축소 및 처리 방법개선 - 업무평가의 전산화 - 통합조사 지원시스템 구축 - 국세행정개혁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지원 	1997~1999

있고 그 아래 총 19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각 지방국세청의 납세지원국에 전산관리과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국세청에 입력된 과세자료는 전산망을 통하여 본청에 모두 통합·집결 되도록 하였다.

2) 전산인력의 변천

전산인력은 인력에 의하여 입력된 자료를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할 때 이에 직접 참여하여 전산처리를 수행하는 인원으로 전산화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전산인력의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여 오고 있다. 전체 국세청 전체 정원에서 전산인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의 5.53%에서 1998년 6.25%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산인력 중 세무직 공무원을 시스템분석가로 활동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선 실무경험과 전산지식을 겸비하였을 때 전산화 시스템의 설계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9년에 들어와서는 인원이나 비중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국세행정개혁의 추진으로 인한 조직의 정비와 효율적인 전산시스템의 개발완료로 인하여 전산인력의 추가적 투입 없이도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산기술의 발전속도는 전산인력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효과적·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운용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전산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였다. 국세청은 이에 부응하여 전산전문직종인 시스템 분석가와 프로그래머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전산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무직원 각각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와 개인 컴퓨터 조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세청은 PC의 보급수준을 국

<표 II-5> 전산요원 현황

(단위 : 명)

	계	세무직	전산직	기능직
1990	912	65	102	745
1991	967	82	148	737
1992	970	82	151	737
1993	946	76	151	737
1994	957	74	148	735
1995	1,033	81	216	736
1996	1,094	72	289	733
1997	1,088	72	289	727
1998	1,079	65	292	722
1999	926	60	280	586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세청 전직원이 1인당 1대씩 사용하도록 하였고 PC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한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화 마인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3) 전산장비의 도입

국세청은 1970년 2월 중형 컴퓨터 기종을 최초로 도입한 이래, 1976년의 종합소득세제, 부가가치세제 시행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국세통합 전산망의 구축에 대비하여 주전산기를 신기종으로 꾸준히 도입·교체하였다. 국세통합시스템 구축의 막바지였던 1996년에 가장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천공기 위주인 입력장치와 CRT 장치 및 마이크로 컴퓨터가 자취를 감추고 대신 PC와 워크 스테이션(W/S)의 도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PC의 경우 1998년도에 국세청 본청 및 일선 세무서 직원 전원에게 1대씩 보급하여 국세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

<표 II-6> 전산요원 비중 및 PC 보급률

(단위 : 명, 대, %)

	국세청 정원(A)	전산요원(B)		PC(C)	
			B/A		C/A
1990	16,481	912	5.53	180	1.09
1991	16,481	967	5.87	724	4.39
1992	16,945	970	5.72	2,414	14.25
1993	17,305	946	5.47	2,642	15.27
1994	17,491	957	5.47	5,358	30.63
1995	17,491	1,033	5.91	7,408	42.35
1996	17,838	1,094	6.13	13,216	74.09
1997	17,625	1,088	6.17	16,233	92.10
1998	17,253	1,079	6.25	17,387	100.78
1999	16,855	926	5.49	17,445	103.5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II-7> 전산장비 도입 추이

(단위 : 대)

	주전산기	입력장치	PC	CRT	Micro Computer	TRS	W/S	Printer
1990	6	376	180	534	-	3	-	-
1991	8	504	724	1,124	26	3	-	-
1992	8	504	2,414	1,449	65	6	-	-
1993	8	504	2,642	1,520	70	6	-	-
1994	8	504	5,358	1,520	87	6	-	-
1995	9	504	7,408	1,560	87	6	-	-
1996	9	504	13,216	1,560	87	6	147	-
1997	4	-	16,233	-	-	6	149	8,543
1998	2	-	17,387	-	-	6	151	4,675
1999	2	-	17,445	-	-	6	151	5,369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으며, 향후 2000년대의 본격적인 전자세정을 실천하기 위한 국세청의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 직원 전원이 전자세정에 대한 마인드와 PC사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으로써 일반납세자의 전자세정에 대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4) 과세자료 처리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는 것이 국세행정 전산화의 주요목적이다. 국세청 전산화 초기에는 판매 및 지급자료 등 법정보고자료를 전산화하였으며, 1976년에 종합소득세제와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으로 소득합산표의 출력,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 등의 과세자료 처리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근거과세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전산실의 규모도 확대되었으며 1981년에는 등기신청서 부분을 전산화함으로써 재산세 자료의 세액결정과 납부세액의 안내까지 전산업무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전산자료 처리의 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소득세 분야의 처리 양이 특히 증가하였다.

<표 II-8>을 보면 소득세 분야에서의 과세자료 처리실적은 1996년에 비해 1997년에는 7배 이상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갑자기 늘어난 소득세에서의 과세자료업무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속도의 증가는 전체적으로도 거의 두 배 가량의 과세자료 처리실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과세자료 처리의 관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된 1996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다.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국세통합시스템(TIS) 이전의 전산처리 시스템도 과세자료의 집중

<표 II-8> 전산자료 처리실적

(단위 : 천건)

	계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1991	258,568	115,334	3,707	934	111,760	26,833
1992	502,189	158,810	186,611	4,413	136,729	15,626
1993	334,381	122,170	55,210	6,070	144,913	6,018
1994	313,295	43,254	99,467	6,763	158,004	5,807
1995	270,371	51,318	97,412	6,852	103,458	11,331
1996	272,030	44,493	72,460	6,207	118,343	30,527
1997	521,590	300,964	72,435	4,885	118,209	25,097
1998	448,361	210,783	82,584	6,982	123,029	24,983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처리로 근거과세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방대한 자료와 부분적인 사무자동화는 전산처리의 한계를 낳았고 수작업과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비효율성도 드러나게 되었다. 증가하는 과세자료와 국제화 및 개방화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새로운 거래형태의 등장과 추가적인 세원의 등장으로 과거의 전산시스템과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또한 1993년 8월에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방대한 양의 자료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세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2000년대 선진세정의 구현과 국세행정 발전 방향의 모색을 위하여 전산부문에서의 지원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국세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큰 기본방향은 첫째, 세정개혁 가속화를 위한 기반 조성 둘째, 새로운 시책의 완벽한 시행준비이며 구체적으로는

- ① 모든 과세정보를 인별·기업별로 통합 누적관리하고 피드백 시스템(Feed back system)을 구축
→ 세정의 사후관리 기능 대폭 확대
- ② 각종 세원정보에 대한 분석·검증, 조사대상자 선정 등을 전산기법에 의하여 실행
→ 담당자의 재량 축소로 세정의 투명성 제고
- ③ 사무자동화를 통한 세정의 생산성 향상
→ 서류 없는 사무실의 구현
- ④ 전직원의 전산요원화, 신속·정확한 자료처리체제 구축 등 전산환경의 개선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차질 없는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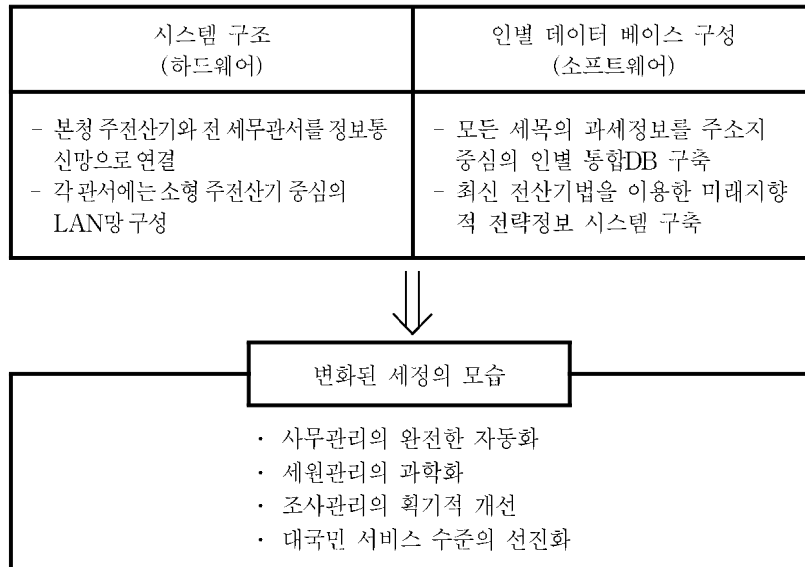
등을 들 수 있다.

국세통합시스템의 구성체계는 크게 하드웨어인 ‘시스템 구조’와 소프트웨어인 ‘인별 데이터 베이스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시스템구조는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청의 주전산기를 중심으로 전세무관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사용관서에서 자료를 직접 입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관서에서는 소형 주전산기를 중심으로 자체 랜(LAN)을 이용하여 전산자원을 전직원이 공유하여 전산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였다.

인별 데이터베이스(DB)는 모든 세목의 과세정보를 주소지 중심의 인별 통합 DB로 구축하여 세목 및 기능간의 연계관리에 의한 성실도 검증 등 과세정보의 다각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더욱 조직적·체계적인 세원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각종 통계, 분석표 작성 등 비정형적인 활용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사용자가 직접 사용

<표 II-9> 국세통합시스템의 체계 및 목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였고 의사결정시스템의 구축과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반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세목별 DB에서 기능별 DB의 구축으로 전환하였으며 조세와 관련된 학술연구에도 과세자료 DB를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하여 과학적인 세정의 분석을 통한 세정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결과로 사무관리의 완전 자동화, 세원관리의 과학화, 조사관리의 획기적인 개선, 대국민서비스 수준의 선진화 등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00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전자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세정정보화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국세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2000~2005년)’을 수립하여 연도별 세부집행계획에 의거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라. 전자세정의 향후계획

국세청은 이제까지 국세청이 실시해 오고 구축해 온 본격적인 전자세정을 펼치기 위한 사전작업을 끝내고 2000년도부터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세정 도입을 통하여 세정의 생산성과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국세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2000~2005년)’을 수립하여 세부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주요 내용을 크게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전자서비스의 제공과 대내적으로는 국세통합시스템(TIS)의 기능활성화 및 내실화, 국세청내의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다.

<표 II-10> 국세정보화 추진의 목표와 기대효과

전체목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ber 시대의 세원관리를 위한 인별납세이력전산관리시스템 구축 -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전자신고시스템의 단계적 시행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기반시설 구축 - 행정업무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자문서 유통체계 구축 - 국세업무 집행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분석을 통한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 납세서비스 향상 및 일선업무량 감축 - 결재처리와 문서유통 절차의 표준화로 행정업무 생산성 향상 - 국세관련 법령 및 필요정보의 즉시 활용 가능

각 부문별 향후 추진계획과 1999년까지 추진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별납세이력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집하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체계를 구축
-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과세정보의 연계분석으로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산에 의한 세부담 분석 및 신고내용의 자동검색을 확대

추진실적:

-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해 수집하는 과세자료의 전산구축
 - 수집대상 서식집 작성 및 전산화 가능성 검토(1999년 9월)
 -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관련법 제정(1999년 12월)
- TIS에 의한 과세정보의 연계분석으로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
 - 전산에 의한 세부담 분석 및 신고내용 자동검색 확대
 - 자료상 혐의자 연계추적 프로그램 개선착수(1999년 9월)
 - 세무서 W/S 활용 시스템 개발착수(1999년 9월)

② 전자신고제도의 도입

추진계획:

-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
- 2002년부터는 소득세·법인세 등 타세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실적:

- 전자신고제 도입계획 수립(1999년 4월)
- 정보화 지원사업선정(1999년 5월)
- 국세기본법 개정(1999년 8월)

-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전자신고시스템 구축완료(1999년 12월)
 - 2000년 3월 1일부터 일부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시범운영하였고 7월 1일부터는 서울시내 모든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③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 전자결제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 및 개발
- 행정자치부의 문서유통표준안을 적용하여 타부처와 문서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트라넷과 사이버교육원 등과 상호 연계되도록 추진

추진실적:

-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기반조성
- 시스템개발착수(1999년 12월)

④ 인트라넷의 전직원 이용 확대

추진계획:

- 업무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업무도우미를 구축
- 각종 세법정보 및 지식정보의 구축
- 업무지침 및 서식수정 수록 등 수록정보를 보완

추진실적:

- 2000년 상반기 중 국세청 전 직원이 인트라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PC 보급
- 인트라넷에 각종 정보 등록 및 개통(1999년 9월)

<표 II-11> 국세청 전자세정을 위한 주요 추진내용

주요내용	세부내용	완료 및 예정시기
전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전자신고, 전화신고 · 전자납부 · 민원증명: 콜센터 설치 ·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 홍보: 인터넷 서비스 중심, 지방청 및 세무서 홈페이지 확대 	전자: 2000. 7 전화: 2001 2000. 7
TIS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제출법 제정 및 금융실명제 제 실시를 대비한 최고의 DB 기관 · CRM(Customer Relation Management)개념에 의한 인별 평생 누적 관리시스템 구축 ·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data warehousing · 지방청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료 및 업무이관 · 국세/지방세 동시 납부 	제출자료결정: 2000. 7 2001
지식 관리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메일 · EIS(Electronic Information System)의 구축 · 인트라넷의 구축 · 전자결재 시행 · 사이버교육원 개원 · 문서관리시스템 가동 	1997 1998 1999 2000 2000. 9 2001

Ⅲ. 정보기술이 국세행정에 미친 경제적 효과

정보기술이 국세행정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국세행정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생산성의 변화를 정보기술과 연관해서 분석해 본다. 그리고 1999년부터 추진 중인 국세행정개혁이 정보측면에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가를 살펴보고, 개혁안 중에서 신용카드 복권제 도입과 체납자 정보공개 효과의 효과를 보여준다.

1. 생산관계 분석을 통한 정보기술의 효과분석

가. 국세행정의 성과지표 추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세행정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산출물은 다양한 것이 특징이므로 민간부문처럼 하나의 성과지표로 평가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국세행정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도록 한다.

국세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세수확보에 있는 만큼, 세수규모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된다. 또한 탈루소득에 대하여 징세하기 위한 조사건수도 국세행정 노력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⁷⁾.

7) 세무조사에 대한 시계열 자료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상대적으로 시계열 자료로 확보되어 있는 자료가 '조세법칙 조사실적'에 관한 것이다. 조세법칙 조사실적은 전체 조사실적의 극히 일부분에 속하므로, 세무조사를 평가하는 데 조심스러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

<표 III-1> 국세행정 성과지표의 유형

고려사항	지 표
국세행정의 목표	징수세액 1백원당 징세비
국세행정의 노력	납세자 100만명당 조세법칙 조사건수
납세자의 만족도	납세자 1만명당 소송건수

국세행정은 납세자들에게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납세자의 만족도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이상 세 가지 지표의 시계열적 특성은 <표 III-2>에 나타나 있다. 먼저 징수세액 1백원 당 징세비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감소하여 비교적 효율적인 구조로 발전하는 듯하다. 징수세액 대비 징세비는 국세행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실무차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은 지표로 비판을 받고 있다.

징세비 추이만으로 판단할 때 1994년부터는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 폭을 보여 주었다. 국세행정에서 정보기술의 도입이 이 시점에 많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정보기술이 국세행정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납세자 대비 조세법칙 조사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납세자 대비 소송건수는 변화가 심한 추세이다. 즉, 국세행정의 노력정도는 감소하고 납세자의 만족도는 뚜렷한 특징은 보이지 않으나, 최근에는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한 분석결과는 국세행정의 노력도와 납세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시계열적 특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나 세 가지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비교적 국세행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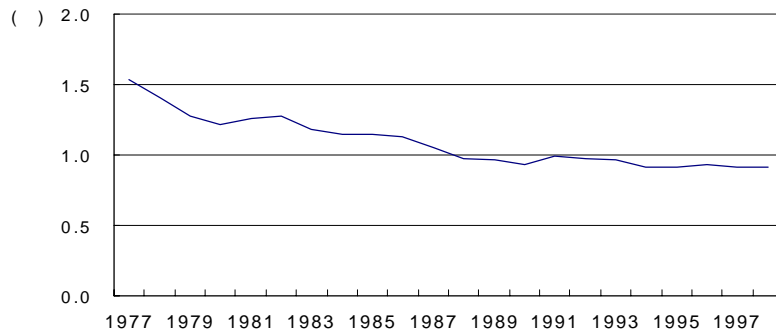
<표 III-2> 국세행정의 산출성과지표

(단위 : 원,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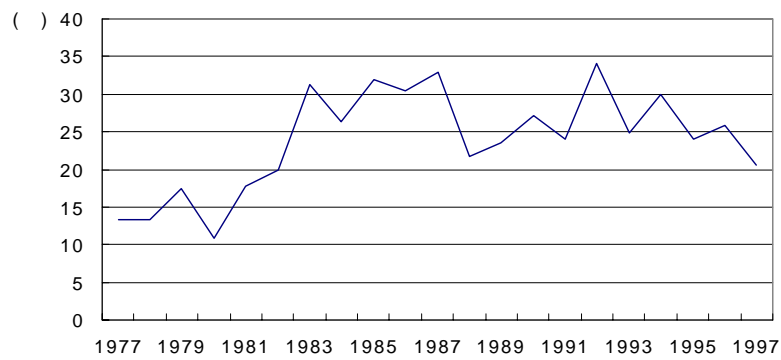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	납세자 10만명당 소송건수	납세자 100만명당 조세범칙 조사건수
1977	1.53	13.4	209.0
1978	1.41	13.4	119.6
1979	1.27	17.4	114.9
1980	1.21	10.8	124.3
1981	1.26	17.8	142.8
1982	1.28	19.9	67.4
1983	1.18	31.2	57.8
1984	1.15	26.3	17.8
1985	1.15	31.9	2.4
1986	1.13	30.4	2.3
1987	1.05	32.9	1.9
1988	0.97	21.7	14.5
1989	0.96	23.5	4.5
1990	0.93	27.2	2.4
1991	0.99	24.1	1.4
1992	0.98	34.1	0.6
1993	0.97	24.8	4.6
1994	0.92	30.0	1.6
1995	0.91	24.1	2.3
1996	0.93	25.8	2.9
1997	0.91	20.6	4.2
1998	0.91	15.2	11.9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재경부, 『결산개요』,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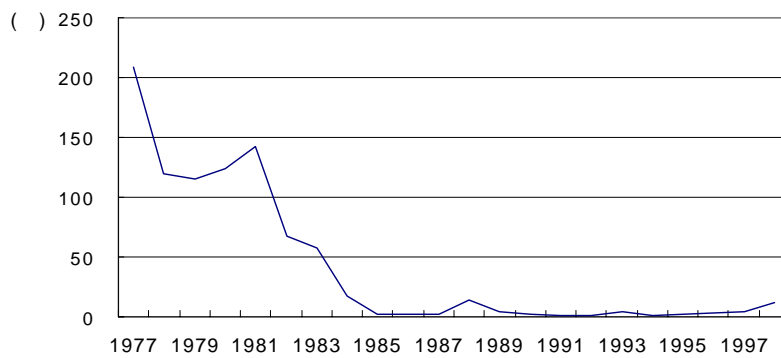
[그림 III-1] 징수세액 1백원당 징세비



[그림 III-2] 10만명당 소송건수



[그림 III-3] 100만명당 조세범칙 조사건수



국세행정의 투입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시계열 특성을 살펴본다. 투입요소로 국세청 전체 직원 수와 인건비를 제외한 국세청 예산을 지표로 사용하여 살펴보면 납세자 수 1천명 당 직원 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국세청 예산은 변화가 심하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⁸⁾.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도 자본지출의 일부분을 차지하므로,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1995년과 1996년에는 납세자 1천명 당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실시에 따라 국세통합 전산망 구축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국세행정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노동의 양은 감소하는 반면, 정보기술을 포함한 자본지출에 대한 투입은 증가하는 추이를 알 수 있다. 이는 국세행정조직이 노동보다는 자본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인건비를 제외한 국세청 사업비의 추세를 평가하기 위해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1995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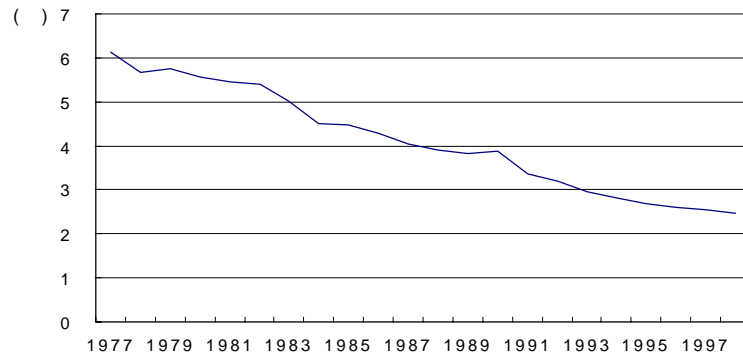
<표 III-3> 국세행정의 투입지표

(단위 : 명,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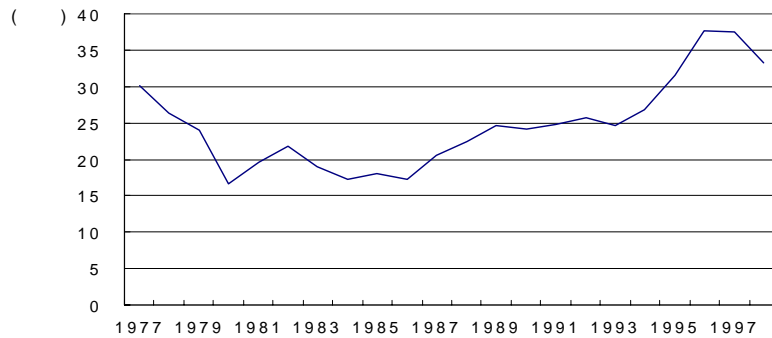
	납세자 1천명당 세무공무원 수	납세자 1천명당 사업비 ¹⁾
1977	6.1	3,008
1978	5.7	2,630
1979	5.7	2,392
1980	5.6	1,664
1981	5.5	1,963
1982	5.4	2,173
1983	5.0	1,895
1984	4.5	1,720
1985	4.5	1,801
1986	4.3	1,728
1987	4.0	2,062
1988	3.9	2,236
1989	3.8	2,456
1990	3.9	2,419
1991	3.4	2,480
1992	3.2	2,577
1993	2.9	2,470
1994	2.8	2,688
1995	2.7	3,149
1996	2.6	3,761
1997	2.5	3,752
1998	2.5	3,325

주 : 1) GDP deflator(1995=100)을 사용한 불변가격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재경부, 『결산개요』, 각 연도.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99.

[그림 III-4] 납세자 수 1천명당 세무공무원 수



[그림 III-5] 납세자 수 1천명당 사업비



나. 분석모형⁹⁾

여기에서는 정보기술이 국세행정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정교한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정보기술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세행정의 투입요소와 산출물 간의 생산관계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국세

9) 여기서 보여주는 모형은 현진권과 문춘걸(2000)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행정의 투입요소와 산출물간의 생산관계를 분석해 본다. 유사한 연구로 Hunter and Nelson(1996)는 미국 국세청의 생산함수를 분석하였으며, 이때 국세청의 산출물로서 세무조사를 통한 추정액을 사용하였다. 공공부문의 산출물은 일반적으로 복수이므로 한 개의 산출물로서 국세행정의 생산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위에서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Hunter and Nelson(1996)의 생산관계 분석과 비슷한 구조를 보여주지만, 다수의 산출물을 고려하여 국세청의 산출관계를 분석한다. 다수의 산출물 각각에 대해 모형을 따로 구성하여 추정하지 않고 복합산출물을 구성하여 한 개의 모형을 추정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출물 각각에 투입되는 투입양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고 둘째, 복합산출물을 구성하여 한 개의 모형으로 추정하여야 산출물간의 상호관계가 보완 관계인지 경쟁관계인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세청의 생산함수가 일반화된 콥-더글라스(*generalized Cobb-Douglas*)로 가정하면, 국세청의 투입요소와 산출물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다수의 산출물과 다수의 투입물이 있는 경우의 생산관계분석은 일반적으로 비용함수를 통하여 모형화한다. 하지만 비용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투입물의 (요소)가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비용을 최소화하며 요소가격이 경쟁가격인 것을 가정하게 된다. 국세를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생산관계분석에서는 비용함수를 통한 접근에서 가정하는 기본적인 가정이 성립되기 힘들다. 따라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생산함수를 통하여 모형화하게 된다. 다수의 산출물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생산함수를 통한 모형화를 시도한 유일한 연구로는 Powell and Gruen(1968)을 들 수 있다. Powell and Gruen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CES생산함수의 개념을 확장하여 CET/CES생산함수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¹⁰⁾.

$$\ln(y_2) = \alpha_0 + \alpha_1 \ln(y_1) + \beta_1 \ln(x_1) + \beta_2 \ln(x_2) + \beta_3 \ln(x_3) + \tau \ln(t) \quad (7)$$

y_1 ≡ 징수세액(백만 원단위, 1990년기준 불변화)
 y_2 ≡ 추정액(추징세액+벌과금, 백만 원단위, 1990년기준 불변화)
 x_1 ≡ 본청직원+지방청직원(명)
 x_2 ≡ 세무서직원(명)
 x_3 ≡ 징세비-인건비(백만 원단위, 1990년기준 불변화)
 t ≡ 시간추세

여기서 y_1 과 y_2 는 국세청의 산출물을 나타내며, 각각 징수세액과 추정액을 나타낸다. 징수세액과 추정액을 별도의 산출물로 구분하는 이유는 징수세액을 1단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투입물의 구성과 수량이 추정액을 1단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투입물의 구성과 수량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징수세액은 국세행정의 통상적인 산출인 반면 추정액은 국세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동원되는 산출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산출물로서는 세금징수 수준과 탈세를 줄이려는 노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자료 중에서 이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대리변수로는 국세징수액과 탈세에 따른 추정액을 들 수 있다. 국세청의 탈세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탈세규모, 세무조사 대상비율 등 다양하나, 시계열자료로서 축적되어 있는 자료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징수액과 추정액이 유일하므로, 국세청에 대한 실증연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투입요소로는 노동으로 x_1 과 x_2 , 자본으로 x_3 를 사용하였다. 노동요소로서 본청 및 지방청 직원과 세무서 직원을 구분한 이유는 본청 및 지방청 직원이 주로 국세행정 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인 반면, 세무서 직원은 일선 세무행정 집행을 담당하므로, 전체 국세청 직원을 정책부서와 일선행정부서로 자원배분을 하는 방식이 국세청

10) CET = 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CES =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의 생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시간추세를 나타내는 t 를 통해서 연구기간 동안 국제행정에서 체계화되지 않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성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국제행정의 산출물은 본 모형에서 고려한 투입요소들 뿐 아니라, 경제환경 및 세제변화 등과 같은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만큼, 이를 고려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사용한 자료 수가 작은 탓으로 모형에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모형에서 설정한 모형이 통계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는 Hansen's J 검정치를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도하였다.

식 (7)은 내생변수가 우변에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15개의 도구변수를 사용한 GMM 추정법(Hansen, 1982)을 사용한다¹¹⁾. 아울러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시계열 상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Newey-West 공분산 행렬 추정치를 사용한다.

식 (7)을 추정한 후 두 개의 산출물을 고려한 정규화한 모형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식 (8)은 식 (7)의 단순한 재표현에 해당한다).

$$\begin{aligned} \frac{-\alpha_1}{1-\alpha_1} \ln(y_1) + \frac{1}{1-\alpha_1} \ln(y_2) &= \frac{\alpha_0}{1-\alpha_1} + \frac{\beta_1}{1-\alpha_1} \ln(x_1) \\ &+ \frac{\beta_2}{1-\alpha_1} \ln(x_2) + \frac{\beta_3}{1-\alpha_1} \ln(x_3) + \frac{\tau}{1-\alpha_1} \ln(t) \\ \iff \\ \alpha_1' \ln(y_1) + \alpha_2' \ln(y_2) &= \alpha_0' + \beta_1' \ln(x_1) + \beta_2' \ln(x_2) + \beta_3' \ln(x_3) + \tau' \ln(t) \end{aligned} \tag{8}$$

식 (8)은 복합산출물과 투입요소들간의 생산관계를 보여주며,

11) GMM에 사용되는 15개의 도구변수는 다음과 같다: $1, \ln(x_1), \ln(x_2), \ln(x_3), \ln(t), (\ln(x_1))^2, \ln(x_1) \ln(x_2), \ln(x_1) \ln(x_3), \ln(x_1) \ln(t), (\ln(x_2))^2, \ln(x_2) \ln(x_3), \ln(x_2) \ln(t), (\ln(x_3))^2, \ln(x_3) \ln(t), (\ln(t))^2$

$\alpha_1' \ln(y_1) + \alpha_2' \ln(y_2)$ 로 정의된 복합산출물은 $\alpha_1' + \alpha_2' = 1$, $\alpha_1' > 0$, $\alpha_2' > 0$ 라는 조건을 통해 2개 산출물의 기하평균으로 구성함을 보여준다.¹²⁾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76년부터 1997년까지 22년간의 연간 시계열자료이다. 징수액 등과 같은 물가수준을 통해 표준화해야 하는 자료는 1990년 기준 GN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표준화하였다. 사용한 변수들의 서술적인 통계치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분석자료의 요약통계치

(단위 : 백만원)

변수명	표본평균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x_1	2,683.909	750.896	1,333.000	3,666.000
x_2	12,385.727	1,213.169	10,141.000	14,877.000
x_3	75,191.424	48,709.631	30,123.506	190,619.683
y_1	19,005,212.610	11,905,118.259	6,623,435.897	43,682,833.905
y_2	27,860.211	23,300.529	2,194.192	82,102.410

주 : 1990년 기준 불변화.

다. 분석결과

먼저 식 (7)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먼저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9개의 과대식별조건에 의거한 Hansen(1982)의 J 검정치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계산되어 점

12) 조건 중 $\alpha_1' + \alpha_2' = 1$ 은 재표현에 의하여 항상 성립되는 수학적인 사실에 해당하며, $\alpha_1' > 0$ 와 $\alpha_2' > 0$ 는 모형의 추정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적 분포인 $\chi^2_{(9)}$ 에 의거하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두 개의 산출물 y_1 과 y_2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정치인 α_1 의 값이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지만 음의 값이 나와서 2개의 산출물간에는 생산에 있어서 경쟁관계(대체재)의 방향성이 있는 것을 보여 준다.

τ 의 추정치가 유의성 없는 음의 값이기 때문에 연구기간 동안에 정보기술의 발달이 조세행정의 산출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부터 국세통합 전산망을 구축하여 국세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기간이 1997년까지인 관계로 정보기술 발전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지는 못했다.

<표 III-6>은 식 (7)의 추정결과를 정규화를 통하여 식 (8)에 대한 추정치로 전환한 결과를 보여 준다. <표 III-5>에서의 추정치와 같이 기술변화의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음의 값을 보여 준다.그러므로 연구기간 동안에 기술발달로 인해 국세행정의 성과가

<표 III-5>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모수	추정치	표준편차	t 통계치	유의수준
α_0	0.174	3.303	0.053	0.959
α_1	-0.430	1.239	-0.347	0.733
β_1	-1.436	1.164	-1.234	0.235
β_2	1.861	1.385	1.344	0.198
β_3	0.904	0.742	1.218	0.241
τ	-0.034	0.050	-0.677	0.508

주 : 추정모형의 관련통계치는 다음과 같다.

관측치의 개수 = 22; 추정되는 모수의 개수 = 6; 자유도 = 16;

직교조건의 개수 = 15; 최소화된 GMM 목적함수의 값 = 0.000;

Hansen의 J검정치 = 0.000.

개선되었다는 경험적 결과는 보여 주지 않는다.

<표 III-6> 정규화된 모형으로 전환된 추정결과

모수	추정치	표준편차	t 통계치	유의수준
α_1'	0.301	0.606	0.496	0.626
α_2'	0.699	0.606	1.154	0.265
α_0'	0.122	2.379	0.051	0.960
β_1'	-1.004	1.543	-0.651	0.524
β_2'	1.302	0.722	1.804	0.090
β_3'	0.632	0.204	3.100	0.007
τ'	-0.023	0.028	-0.843	0.412
$\beta_1' + \beta_2'$	0.930	1.289	0.721	0.481

본 연구는 1976년부터 1997년 기간 동안의 국세행정 실태자료를 통한 분석결과이다. 1999년 이후 국세청은 개청 이후 최초로 대규모 세정개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본 연구에서 반영되지 못했지만, 향후 자료가 확보될 경우 분석될 예정이며, 그 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평가

조세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효율적인 업무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1999년에 국세청은 획기적인 국세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개혁방향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정보측면에서 평가해 볼 때 국세청의 기능 중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행정업무를 크게 자료관련 업무와 세무조사

로 구분할 때, 과거에는 자료관련 업무에 너무 치중한 면이 있었다. 현진권(1998)에 의하면 과거의 세정업무에서는 자료관련 업무가 전체의 약 70% 가량을 차지하고, 세무조사가 나머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무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었고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미비하게 되었다.

1999년 국세행정개혁의 기본방향은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축적을 위해서는 높은 행정비용을 치르기도 타 정부 부서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등 국세통합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구축을 위한 행정비용은 최소화하면서 그 효과성은 높이는 세무조사 기능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행정개혁의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정확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추가적 비용 없이 자료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세무행정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세무행정의 커다란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1999년 국세행정개혁안은 조세비용 중의 중요한 요소들인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1)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완전한 파악: 행정비용 감소
 - 개인 납세자별 납세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 (2) 납세자의 신고체계의 변화: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감소
 - 전자신고제도의 도입
- (3) 세무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행정비용 감소
 - 전자결재시스템의 구축

- 인터넷 활용을 통한 청내 정보흐름의 원활화

국세행정개혁안은 여러 가지의 정책수단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들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향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시행 이후의 효과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축적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세행정개혁안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 중에서 그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가.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효과

2000년 이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유인제도를 자영업자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유인제도를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와 『신용카드사용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통하여 근로소득자에게도 확대·적용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실현하고 증산층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의 실시 이전에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유인제도(카드매출세액공제, 매출전표수취세액공제 등)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용카드결제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세원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을 소비자에게도 제공하면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을 강제하는 효과도 있고, 소비자 스스로도 카드사용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고자 할 것이므로 사업자와 소비자 양자를 통한 과표양성화의 효과와 이를 통한 세수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따라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를 2000년 1월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하여 2000년 2월에 첫 추첨을 실시한 이래 6월까지 5회를 추첨하는 동안 추첨자료는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우에는 2월 첫 추첨시 3천 4백만건에서 6월 추첨시 4천 7백만건으로 (140%정도 증가), 가맹점은 1천 4백만건에서 2천 2백만건으로 (150%정도 증가) 증가하여 과세자료 양성화와 세수의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제 시행 이후 신용카드의 사용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자영업자의 세금과 관련이 있는 재화·용역거래는 2000년 상반기 동안 신용카드 사용건수와 금액이 1999년 상반기에 비해 약 2배가 늘어났으며 매월 사용건수와 금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1분기, 2분기 대비 신용카드 사용 건수의 증가율은 203.5%, 금액의 증가율은 195.0%에 달하고 있다(<표 III-7> 참조).

복권제 시행 후 나타나는 효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소비자의 결제 패턴을 현금 위주에서 신용카드 위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전에는 보통 1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카드로 결제하던 관행을 복권제의 시행이후에는 천 원 단위의 소액거래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의 대금결제 형태의 변화에 따라 사업자도 자연스럽게 카드결제를 수용하는 풍토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도 별 어려움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표 III-7> 복권제 시행 이후 재화·용역거래 신용카드 사용 증가추세

(단위 : 천건, 억원, %)

1999년 상반기		2000년 상반기		1999년 대비 증가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49,903	172,785	305,051	336,958	203.5	195.0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둘째, 과표의 양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매 및 서비스업자는 과표양성화로 인한 소득세 부담 때문에 제조 및 도매업자로부터 매입에 관련되는 과세자료를 받는 것을 이전에는 거부하여 왔다. 그러나 최종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용을 보다 선호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매 및 서비스업자도 매입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소매 및 서비스업자의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의 수취율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이는 결국 상위 유통단계인 도매업, 제조업 등의 추가적인 과표양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온다. 신용카드 매출의 증대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세수증대를 가져온다.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의 시행으로 조세수입의 증대는 물론 투명한 신용사회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표 III-8> 신용카드 가맹점 및 이용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카드수 (천매)	가맹점 (천점)	이용금액			
			계	일반	할부	현금서비스
1996	41,113 (23.5)	3,461 (25.4)	630,328 (22.2)	203,460 (35.2)	122,783 (21.5)	304,085 (15.1)
1997	44,687 (8.7)	4,257 (23.0)	721,153 (14.4)	243,206 (19.5)	138,593 (12.9)	339,354 (11.6)
1998	42,017 (-6.4)	4,648 (9.2)	635,507 (-11.9)	206,573 (-15.1)	101,675 (-26.6)	327,259 (-3.6)
1999	38,993 (-7.2)	6,192 (33.2)	907,827 (42.9)	300,631 (45.5)	124,050 (22.0)	483,146 (47.6)

주 : 1. 가맹점은 중복가맹점 포함.

2.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 여신금융협회, <http://www.kla.or.kr/>.

복권제 시행 초기부터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나. 국세체납자 정보공개 효과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신용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국세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였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자료는 연합회가 운영하는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기관 등의 이용기관들이 다양하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제공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자료제공 기준일 현재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자 중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
- ② 자료제공 기준일 현재 결손처분액¹³⁾ 5백만 원 이상인 자

2000년 8월 1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자료를 살펴보면 순인원 292,187명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대상으로 출력되어 29,549명이 자료제공 제외 또는 연기처리 되고 262,638명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최종적으로 제공되어 등록되었다. <표 III-9>를 보면 체납자와 결손자의 자료제공 비율은 18 : 82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결손처분자료 제공기준이 금액으로는 체납의 절반 수준인 5백만 원이고, 체납에는 규정된 발생의 시기 및 횟수에 대한 제한이 결손에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3) 자료가 제공되는 결손처분액은 1996년 12월 30일 이후 인별누적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표 III-9> 자료제공대상 출력 및 제공현황

(단위 : 명, %)

	출 력	제외·연기	제 공
-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86,720(22.5)	23,100(60.2)	63,620(18.3)
· 1년경과 체납	70,070(18.2)	15,431(40.2)	54,639(15.7)
· 1년 3회 이상 체납	16,650(4.3)	7,669(20.0)	8,981(2.6)
- 5백만 원 이상 결손자	298,996(77.5)	15,302(39.8)	283,694(81.7)
합 계	385,716(100.0)	38,402(100.0)	347,314(100.0)
순 인 원	292,187	29,549	262,638

주 : 1. 동일인에 대하여 체납과 결손이 구분되어 제공되고, 세무서
별로도 구분되어 제공됨

2. () 안은 합계 대비 비율.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1) 체납세금 징수효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으로 인한 체납세금의 징수효과를 살펴보면 체납(결손)자로부터 1,955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결손)자 1인당 평균징수금액은 835만 원을 기록하고 있다.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는 체납(결손)은 대부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으로 현금징수가 어려운 체납임을 감안할 때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에 따른 체납세금의 징수효과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고질적인 체납자로부터의 징수금액이 전체 징수금액 중 43.9%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3회 이상 체납한 상습적인 체납자로부터는 32.3%를 징수하였다. 특히, 공부상 무재산 또는 폐업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세수일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500만 원이상의 결손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액도 전체

<표 III-10> 체납세금 징수현황

(단위 : 명, 억원, %)

		합 계	1천만 원 이상 체납		5백만 원 이상 결 손
			1년 경과	3회 이상	
합 계	인 원	23,426 (100.0)	11,051 (47.2)	6,478 (27.7)	5,897 (25.2)
	금 액	1,955 (100.0)	858 (43.9)	631 (32.3)	466 (23.8)

주 : 징수금액 1,955억 원 중 1,734억 원은 자료제공 예고(5.26)후부터 6월 30일까지 자료제공진 납부실적이며, 221억 원은 자료제공 후 7월 11일까지의 납부실적임.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징수금액의 23.8%를 차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순으로 많은 세금이 징수되었다. 부가가치세가 1,166억 원이 징수되어 전체 징수세액의 59.6%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1년 경과 및 상습체납자, 결손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징수세액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가가치세가 탈루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전체 징수세액 223억 원의 55.2% 수준인 123억 원이 결손처분자로부터 징수되어 비사업자에게도 금융제재는 체납세금 납부유도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시사하고 있다.

2) 명의위장사업자 축소효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명의위장사업자의 명의대여자가 금융제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사업자와 담합을 통한 명의대여 등이 축소되어 명의위장사업자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⁴⁾.

-
- 14)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후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기존의 명의 대여자의 고충이 상당수 접수되어 실제 사업자를 밝히는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표 III-11> 세목별 체납세금 정수현황

(단위 : 명, 억원, %)

	합 계	1천만 원 이상 체납		500만 원 이상 결 손
		1년 경과	3회 이상	
부가가치세	1,166(59.6)	491(57.2)	473(75.0)	202(43.3)
종합소득세	267(13.7)	129(15.0)	69(10.9)	69(14.8)
양도소득세	223(11.4)	93(10.8)	7(1.1)	123(26.4)
상속·증여세	120(6.1)	87(10.1)	6(1.0)	27(5.8)
원 천 세	67(3.4)	17(2.0)	20(3.2)	30(6.4)
법 인 세	58(3.0)	25(2.9)	21(3.3)	12(2.6)
기 타	54(2.8)	16(1.9)	35(5.5)	3(0.6)
합 계	1,955(100.0)	858(100.0)	631(100.0)	466(100.0)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대상자 중 체납세금의 납부 등으로 자료제공이 제외 또는 연기된 체납자들은 물론 체납이 없는 납세자들도 향후 체납발생시 금융기관들의 제재를 예상하게 되어 신규체납발생억제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세무공무원의 과세 및 결손절차 준수효과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으로 과세 및 결손처리에 대한 정당성이 사후적으로 검증됨에 따라 국세청 직원들도 세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풍토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향후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업무 추진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업무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 국세청은 체납세금의 납부독려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외환위기로 불가피하게 부도·폐업된 사업자 중에서 분납 등의 성의 있는 납부노력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연기 등의 유예조치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체납(결손)자들이 체납세금 납부 등의 원인으로 자료제공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불량신용정보로 등록된 내용이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전국은행연합회와의 전산체계를 개선하여 나갈 예정이다.

IV. 외국의 전자세정

조세행정에서 정보기술의 도입은 많은 선진국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조세행정에서 정보기술을 비교적 활발하게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들 중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대해 살펴본다.

1. 미국의 전자세정

전자세정(ETA: Electronic Tax Administration)의 도입은 납세자와의 거래와 교류를 혁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전자세정은 납세자들에게 공정하고 성실하게 세법을 적용하고, 그들의 책임성에 부합하는 한편 이해를 도움으로써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이다.

납세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미국 국세청이 계속적으로 자원투입에 의존하는 것은 납세자와 연방정부간의 비용만 증대시킬 뿐이었다. 예산제약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면위주의 방식과 오류발생의 경향이 있는 처리방식은 납세순응비용 및 행정비용의 증가만을 가져왔다. 점진적인 접근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담하고 혁신적인 방안의 도입으로 납세자들이 세법에 순응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고 납세자들의 세무신고 방안과 납부방법을 제공하는 등 미국 국세청과 교류하고 거래하는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전자세정이다.

미국이 전자세정을 도입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였다. 첫째, 납세자의 납세순응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우편 및 방문을 통하여 세무공무원과 접촉을 함으로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업무처리 시간 및 금전상의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조세행정 시스템의 현대화는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 자료처리건수의 축소, 우편량 등을 감소시켜 납세순응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둘째는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순응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의 고안으로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잡한 법률이 미국 국세청의 각종규제와 프로그램 및 절차들의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단순한 법률이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순응과 이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생산성의 증대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은 매년 서류작성, 오류수정, 최신장비의 유지, 납세자와의 서신교류 등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였다. 이러한 비효율을 컴퓨터 및 원격통신 장비를 현대화하고 국세청 직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거래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비용의 절감과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가. 전자세정 도입 목적

미국의 전자세정은 ①개별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공여, ②전체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공여, ③업무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한 생산성의 증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2007년까지의 장기적인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한편, 2003년까지의 중기목표를 설정하여 정보 기술을 이용한 미국의 조세행정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ETAAC(Electronic Tax Administration Advisory Committee)와 CERCA(Council for Electronic Revenue Communication Advancement)의 추천에 따라 목표를 충실히 달성

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2003년까지의 중기전략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미국 국세청이 조직의 현대화를 이룩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래의 임무에 명기된 서비스의 우선 순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균형적 측정시스템(Balanced Measurement System)과 동일한 것이다. 균형적 측정시스템은 납세자 만족도, 세무직 종사자의 만족도, 사업결과(질, 양 및 파급효과)의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하여 측정하는 핵심적 도구이다. 각각의 요소들은 미국 국세청의 전체적인 목표를 나타내며, 각 요소는 전자세정의 기능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전자세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곱 가지의 핵심전략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곱 가지의 핵심전략 살펴보면 ①전자신고, 납부 및 정보교환의 단순화, 전화 및 전자메일 이용의 용이성 및 비용 효율성, ②전자신고를 위한

<표 IV-1> 중기 및 장기적 목표

2003년까지의 중기목표	2007년까지의 장기목표
전자신고화 할 수 있는 모든 신고서식을 전자파일화(60%)	미국 납세자의 80%가 전자거래
전자신고 건당 거래비용을 3.50 달러(1996년 기준 가격) 이하로 감소	전자신고 건당 거래비용을 2 달러(1996년 기준 가격) 이하로 감소
거래의 투명성과 내부처리의 정확성을 99% 달성	거래의 투명성과 내부처리의 정확성을 99.9% 달성
납세자 만족도 80% 달성	납세자 만족도 90% 달성
세무전문직 종사자의 만족도 80% 달성	세무전문직 종사자의 만족도 90% 달성
세무직공무원의 만족도 70% 달성	세무직공무원의 만족도 90% 달성

자료 : IRS, *Electronic Tax Administration - A Strategy for Growth*, 1999.

접근성, 납부, 정보교환 수단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증가, ③거래 투명성의 적극적인 보장 및 내부자료 처리의 정확성, ④전자신고 건당 처리비용의 실질적 감소, ⑤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 ⑥성공을 위한 최고의 인력, 최상의 아이디어 및 직원의 발굴, ⑦세무직 종사자 및 직원의 능력제고를 위한 업무환경의 창출 등이다. 미국 국세청은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목표에 위의 일곱 가지 핵심전략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표 IV-2> 참조).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전략도 전략별로 세부실천사항을 분류하여 장기적인 목표와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구별하여 세부실천사항을 실행하면 장기적인 목표도 달성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나. 전자세무행정의 현황

1) 개인납세자를 위한 전자신고

미국 국세청의 개인납세자에 대한 전자세무행정은 1986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5,000명의 전자신고를 처음 시험실시하면서 도입되었다. 1999년에는 전체 신고자의 4분의 1이 전자신고를 하고 있으며 그 동안 미국 국세청은 이러한 결과를 위하여 수많은 장려시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1989년에는 정식으로 전자신고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도입한 첫해에 백만명 이상이 전자신고를 하였다. 특히 그 이듬해에 South Carolina 주에서는 단 한번의 신고로 연방세와 주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9년에는 워싱턴 D.C.와 35개 주에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85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미국 국세청은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납부(File Now Pay Later)하는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동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4월 15일까지 서식 1040V에

<표 IV-2> 장기목표와 중점 추진전략

장기목표	중점 추진 핵심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납세자의 80%가 전자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전자신고, 납부 및 정보교환의 단순화, 전화 및 전자메일 이용의 용이성 및 비용 효율성 ②전자신고를 위한 접근성, 납부, 정보교환 수단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건당 거래비용을 2 달러(1996년 기준 가격) 이하로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전자신고 건당 처리비용의 실질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의 투명성과 내부처리의 정확성을 99.9%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거래의 투명성의 적극적인 보장 및 내부자료 처리의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만족도 90%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전자신고, 납부 및 정보교환의 단순화, 전화 및 전자메일 이용의 용이성 및 비용 효율성 ⑤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 ⑥성공을 위한 최고의 인력, 최상의 아이디어 및 직원의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전문직 종사자의 만족도 90%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전자신고를 위한 접근성, 납부, 정보교환 수단 및 서비스의 지속적인 증가 ⑤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 ⑥성공을 위한 최고의 인력, 최상의 아이디어 및 직원의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직공무원의 만족도 90%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세무직 종사자 및 직원의 능률제고를 위한 업무환경의 창출

자료 : IRS, *Electronic Tax Administration - A Strategy for Growth*, 1999.

지불증명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한 1999년부터는 수표나 저축계정을 이용하여 납부한 납세자들이 4월 15일(15일 포함)까지 정부의 인출날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 국세청은 각종 서식이나 명세서 등 전자신고대리인의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한편, 개인납세자들을 위한 신고방법도 개발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전화신고시스템(TeleFile System)이다. 동 방법은 1991년에 연구를 시작하여 1992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방법은 수백만명의 납세자들이 단 십분 동안의 전화통화로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 국세청은 신고자의 납세신고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마지막에 확인번호를 제공한다. 전화신고 방식은 매우 간편하고, 자유롭고, 휴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내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 후 급성장을 하였다. 1999년 신고기간 동안에 570만명의 납세자들이 이를 이용하였다.

또한 미국 국세청은 1990년대 중반에 납세자의 가정에서 자신의 개인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신고방식에는 모뎀이 필요하며 미국 국세청이 인증한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서비스 공여자 및 전자신고 전달자가 필요하다. 1995년에 온라인을 통한 신고에 1천명을 대상으로 시험적인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1995년 현재는 250만명이 동 제도를 통한 신고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1999년에는 전자서명제도와 몇 가지의 전자지불시스템을 시험 추진하였다. 7만 5천명 이상의 납세자들은 전자신고시 그들의 수표계정이나 저축계정에서의 인출을 허락함으로써 납부하였다. 더욱이 5만 3천명의 납세자들은 세금납부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미국 국세청은 또한 백만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무서면 신고 경험을 제공하는 두 가지의 시험 방안을 시행하였다. 즉, 전자신고 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와 온라인 신고에 있어서 서면에 직접 서명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납세자의 서명대신에 개인식별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를 이용하는 것을 시험 운영하였다.

미국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의 전자신고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대한 교육과 전자신고 이용의 편익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IRS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위한 로고와 새로운 명칭

을 도입하였다. 차기 신고기간에 대비하여 캠페인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납세자의 태도별, 인지도별, 능력별 연구가 매년 실시되었다. 대략 캠페인 비용으로 1998년 회계연도에는 5백만 달러, 1999년 회계연도에는 8백만 달러를 지출하였고 2000년 회계연도에는 1,300만 달러를 홍보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이다.

<표 IV-3>을 보면 새로운 신고방식들과 전자신고대리인의 전자 신고 현황을 살펴볼 수가 있다. 초기에 급격히 증가되었던 전자신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증가 추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있다.

<표 IV-3> 미국 국세청 개인납세자 전자신고 현황

(단위 : 천명, %)

	신고대리업자	전화신고	On-Line 신고	전체
1986	25			25
1987	78(212.0)			78(212.0)
1988	583(647.4)			583(647.4)
1989	1,161(99.1)			1,161(99.1)
1990	4,204(262.1)			4,204(262.1)
1991	7,567(80.0)			7,567(80.0)
1992	10,919(44.3)	125		11,045(46.0)
1993	12,334(13.0)	149(19.2)		12,482(13.0)
1994	13,502(9.5)	519(248.3)		14,021(12.3)
1995	11,126(-17.6)	680(31.0)	1	11,807(-15.8)
1996	11,971(7.6)	2,839(317.5)	158	14,968(26.8)
1997	14,083(17.6)	4,686(65.1)	367(132.3)	19,136(27.8)
1998	17,668(25.5)	5,955(27.1)	942(156.7)	24,580(28.4)
1999	21,223(20.1)	5,664(-4.9)	2,458(160.9)	29,346(19.4)

주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 IRS, *Electronic Tax Administration - A Strategy for Growth*, 1999.

〈표 IV-4〉 미국의 개인소득세 신고 중 전자신고 비중

(단위 : 백만건, %)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추정)
총신고 건수(A)	112.3	116.1	118.4	120.3	122.5	124.9	127.4
전자신고 건수(B)	4.2	11.8	15.0	19.1	24.6	29.3	35.3
(B/A)	3.74	10.17	12.65	15.90	20.06	23.48	27.74

자료 : IRS(http://www.irs.gov/tax_stats/soi/other_nr.html).

2) 기업을 위한 전자신고 제도

미국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기업에 대하여도 도입하였다. 개인보다는 약간 늦은 1988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개인에 대한 전자신고보다는 초기에는 급격하게 증대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전자신고와 납부는 도약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국세청이 '신고서식 1065'에 속하는 Schedule K-1, '신고서식 1041', '신고서식 5500'을 전자신고용으로 채택하였을 때인 1988년에 처음으로 기업을 위한 전자신고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1998년까지 미국 국세청은 '신고서식 1065'의 Schedule K-1은 2백 20만건을 접수하였고 '신고서식 1041'의 Schedule K-1은 1백 30만건을 접수하였다. 2000년에는 '신고서식 1065' 전체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2001년에는 조합원 100인 이상을 가진 대규모 조합에 대하여는 '1997년 납세자 구제법(Taxpayer Relief Act of 1997)'하의 전자신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1994년에는 사업주의 분기별 연방세 신고서식인 '신고서식 941'에 대한 전자신고를 도입하였다. 초기에는 원천징수 대리업자에게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입 첫 해의 신고는 15,606건이었

<표 IV-5> 미국 국세청의 기업을 위한 전자신고 도입 내용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식 1065'의 Schedule K-1의 전자신고 · '신고서식 1041'의 전자신고 · '신고서식 5500'의 전자신고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납부를 위한 조세연결(TaxLink)의 시작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식 941'의 전자신고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연방세납부시스템(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의 운영시작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식 941'의 전화신고 시험실시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식 941'의 온라인신고 시험실시

자료 : IRS, *Electronic Tax Administration - A Strategy for Growth*, 1999.

으나 1998년에는 856,579건으로 급격히 증가되었다. 1997년에는 '신고서식 941'에 전화신고를 시험 도입하였고, 1998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시행 첫 해에 756,080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On-Line 전자신고제까지 도입하였으며 2000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표 IV-6>에서 기업을 위하여 미국 국세청이 도입한 전자신고에 관한 내용과 실적을 살펴볼 수 있다.

3) 전자지불

미국 국세청은 전자신고뿐만 아니라 납부체계도 자동화하고 있다. 1992년에는 TaxLink라고 명명된 자동화된 연방세 납부계정(Federal Tax Deposits)의 시험실시에 착수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기업은 채무자동결제제도(ACH debt)나 신용을 통하여 그들의 조세채무를 결제한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표 IV-6> 기업의 전자신고 실적

(단위 : 천건)

신고방식	1998(실적)	1999(추정)
신고서식 941(전자신고(e-file))	857	1,304
신고서식 941(전화신고(TeleFile))	756	953
신고서식 1041	1,024	1,143
Schedule K-1 (1041)	1,301	1,408
Schedule K-1 (1065)	2,172	2,321

자료 : IRS, *Electronic Tax Administration - A Strategy for Growth*, 1999.

통과에 따라 전자납부는 급속히 신장하였다. 본 협정에 의하면 1999년까지 모든 연방세 납부의 94%를 전자결제를 통하여 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의 지원을 받는 재무성의 금융운영서비스(Financial Management Service)는 보다 엄격하고 완전한 TaxLink로 대체됨에 따라 전자 연방세 납부시스템(EFTPS: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을 운영하기 위해 'First Chicago'와 'NationsBank' 두 개의 금융기관과 경쟁적 계약을 맺었다. EFTPS를 이용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전화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에 직접 가거나 수표 및 FTD 쿠폰을 이용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였다. 1996년 11월 EFTPS의 출범 이후 거의 2.9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이 연방세 납부계정으로 전자납부되었다. 260만개의 기업이 EFTPS에 등록하고 있으며, 1999년 회계연도에는 전체 연방세 납부계정의 89% 이상을 차지하는 EFTPS를 통하여 연방세 납부계정으로 1.3조 달러의 세금이 납부되었다.

4) 전자정보서비스

1996년에 미국 국세청은 'Digital Daily(www.irs.gov)' 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TaxFax를 개설하여 팩스형태로 신고서식을 되받거나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홈페이지로부터 각종 신고서식, 지도사항 및 출판물을 포함한 5,000여 가지에 달하는 세무정보 등 필요로 하는 조세정보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수는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이용자는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여 1999년 회계연도 동안에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는 개설 이후 처음으로 10억 건의 조회를 받았다.

또한 세무대리인 등 세무전문직을 위한 코너를 웹사이트에 추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법조항과 절차, 세무전문가를 위한 새로운 소식과 행정정보, workshop 정보, 전자신고발송자(Electronic Return Originator)가 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D-ROM의 이용과 기업과의 작업을 각종 신고서식, 출판물 및 기타정보의 배포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기업과의 협동(Corporate Partnership Program)을 통하여 대기업내의 고용자들이 기업내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국세청은 전자메일을 통하여 납세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 및 해외의 납세자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다. 전자세정의 과제

미국 국세청은 매년 2억건 이상의 세무신고와 10억건 이상의 각종 정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또한 8,800만명의 개인에 대한 환급과 1억 1천만건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답신을 하고 있으며, 1조 7천억 달러의 조세를 징수하고 있다¹⁵⁾. 이중 일부는 전자세정을 통하여 이루

15) IRS, *Electronic Tax Administration—A Strategy for Growth*, 1999.

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된 방법으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다.

개인소득세 전체 신고 중 전자신고를 통한 경우는 4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며,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도 디스켓 등의 매체를 이용하거나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8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향후의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한 전자세정의 발전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미국 국민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개인간의 접촉과 서류를 기반으로 한 방식은 점차로 전자적인 수단을 통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략 4천만 가정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까지는 6천만 가정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개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전화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식보다 전자메일을 압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98년 전자세정에 관한 납세자의 태도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전자세정에 관한 납세자들의 태도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개인부문과 관련하여 미국 국세청의 과제는 전화나 서류를 통한 전통적인 방식을 보다 선호하는 납세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보다 단순하고, 보다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세정의 시행은 성공가능성도 높지만 반대로 장애요인도 함께 존재한다. 전자세정을 위한 기술적인 하부구조의 완벽 구축, 전자서비스 비용과 복잡성, 납세자의 불신 제거, 사적비밀과 안전성의 보장, 전자세정 운영주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 기술적 하부구조

현재 미국 국세청의 법률적 체계는 향후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장래에 기대되는 요구들을 처

리할 수 있도록 전자세정을 위한 기술적 하부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국세청은 전자신고 발신자(ERO: Electronic Return Originator)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세무신고의 양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세청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 납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국세청 핵심 사업의 현대화를 관리하는 데에 주요 협력자가 될 컨설팅업체와 기술팀 및 컴퓨터공학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전자서비스 비용과 복잡성

전자신고의 절차가 단순화되지 않거나 세무직 종사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서류신고시 투입되는 비용보다 저렴하지 않다면 전자세정의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비록 미국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일부의 서식이나 세율표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 우선 과제는 전자신고 체계를 단순화하고 보다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세무직 종사자 및 납세자들 양자가 이용하는 데에 비용이 저렴해야만 한다.

3) 납세자의 불신

전자신고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오히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전자신고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자신고를 하는 것이 서류를 통하여 신고하는 것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세무신고가 서류에 의한 신고인지 전자신고인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뢰를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리고 납세자의 의심을 없애기 위하여 이에 대처할 만한 단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조사 및 연구분석을 수행하여 전자세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태도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덜 혼란스럽고, 국세청과 덜 접촉하며, 서류에 의한 신고보다 훨씬 더 빨리 환급된다는 것을 홍보하여야 한다. 실제로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국세청과 계속적으로 접촉하며 수동신고나 서면신고를 하는 경우가 40배 정도 시간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통계치는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전자신고에 대한 신뢰성의 구축은 이로 인한 혜택과 성공가능성 및 용이성에 의하여 지지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다.

4) 사적비밀과 안전성의 보장

납세자들은 미국 국세청과의 전자거래에 있어 과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조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납세자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납세자 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미국 국세청은 1998년에 ‘전자인증에 관한 방침 및 계획(Electronic Authentication Principles and Strategy)’이라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국세청과 국민간의 전자거래에 있어서 합법화된 신분구별을 제정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향후 몇 년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암호화를 위해 개인식별번호(PINs: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s)의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세정 시스템은 인증의 안전성 및 인가지침과 일치하도록 고안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세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납세자정보의 최소수준을 유지하고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사적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5) 전자세정 운영주체의 투명성과 책임성

1997년에 미국 국세청은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된 프로그램의 운영·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Assistant Commissioner)의 주도하에 새로운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전자세정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화하는 중요한 일보를 내딛었다. 미국 국세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우대협력자(PRIME Alliance)에 의하여 인도된 전자세정에 대한 정보기술능력을 조정하기 위한 현대화 프로그램에 관한 부서(Modernization Program Office)와 계정관리부서(Account Management Division)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거래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기 위한 두 개의 부서를 재편성하였다.

미국 국세청은 여러 기관들의 다양한 전자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준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세정의 범위와 역할을 지켜 보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미국 국세청은 현재의 업무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과 민간부문과 새로운 협력관계의 설립 등 주어진 시간 내에 전자세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협의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2. 호주의 전자세정

전자세무행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조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조세 관

런 정보로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세금 관련 간행물로부터 간단한 세금 소개 팜플렛까지 여러 종류의 정보를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전자적으로 납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두 번째 단계 혹은 그 이상에 올라와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나라들로는 호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있다.

호주는 정부행정의 전자화(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에 선도적인 나라로 그 동안 많은 나라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 왔다. 호주 수상은 1997년 'Investing for Growth'에서 정보화 사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때 밝힌 내용은 2001년까지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정부 온라인 담당 부서 OGO(Office of Government Online)내에 정부정보센터(Government Information Center)를 설립하여 2000년까지 전자 결제를 정부의 통상적인 지불 수단으로 이용하며 온라인 보안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82%의 정부기관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90% 이상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인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표명에 의해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는 인터넷에 기반을 둔 ECI(Electronic Commerce Interface)를 구축하여 '호주 국세청의 모든 것(whole of ATO)'을 전자 정보화하여 납세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호주의 빅토리아 주(Victoria State)가 호주 연방정부와 함께 가장 선도적인 전자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에 의하면 이와 같은 전자 서비스의 도입으로 약 130만 호주달러의 절약효과를 보았다고 발표하였다. 인터넷의 확산은 이러한 전자 서비스 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하였다.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 의하면 2000년 5월 현재 380만 가구가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30만 가구가 인터넷을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가. 전자신고 제도

호주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전자신고 제도는 ELS(Electronic Lodgement System), Tax Pack Express, e-BAS(electronic Business Activity Statement), e-tax 등이 있다.

<표 IV-7> 전체 인구 대비 호주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

(단위 : %)

1997년 9월	1998년 12월	1999년 12월
7	24	36

자료 : NUA Internet Survey(<http://www.nua.net/surveys>).

1) ELS(Electronic Lodgement System)

ELS(Electronic Lodgement System)는 전자신고 시스템으로 1987년 처음으로 호주 국세청에 도입되었으며, 전문 세무 대리인을 통하여 납세신고를 할 경우 ELS를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호주 국세청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1988년 4월 이후에는 소득세 신고는 모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세무 대리인 혹은 납세자가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 당시 세무 대리인

은 컴퓨터 모뎀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혹은 납세신고 디스켓을 우편으로 호주 국세청에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1999년 7월 1일 이후에는 디스켓에 의한 납세신고는 받지 않고 있다.

ELS를 이용한 납세신고 건수가 1994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전체의 약 60%에 이르렀으며, 지난 3년간에는 ELS를 이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건수는 전체 납세신고 건수의 약 70%를 차지한다.

ELS는 세무 대리인만 사용 가능하며 스스로 납세신고서를 작성한 납세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호주 국세청에서는 스스로 납세신고서를 작성한 개인 납세자들도 세금 신고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음에 설명할 Tax Pack Express와 e-tax가 이에 속한다.

2) Tax Pack Express

Tax Pack Express는 개인 납세자들이 스스로 작성한 납세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때 우체국에 마련된 Tax Pack Express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 서비스이다. 우체국 이외에 세무 대리인들도 호주 국세청에 등록함으로써 Tax Pack Express 프로그램을 보유할 수 있어 일반 납세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호주에서 Tax Pack이라 함은 납세자들을 위한 납세신고 양식과 설명책자를 의미한다. 매년 호주 국세청에서 발간하며, 지정된 공공장소 혹은 호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Tax Pack은 서면 신고를 위한 것으로 납세자 중에서 전자적으로 세금을 신고하여 그 혜택을 얻고자 할 때 Tax Pack Express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Tax Pack Express 제도가 ELS 제도와 다른 점은 첫째, ELS는 세무 대리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만 전자적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Tax Pack Express의 도입으로 세무 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전자적으로 납세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체국 이외에 세무 대리인도 Tax Pack Express 프로그램을 소유할 수 있지만 납세자가 Tax Pack Express 프로그램을 세무 대리인을 통하여 이용할 경우 세무 대리인은 단지 납세신고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주는 일만을 할 뿐, 납세자의 납세신고에 대해 조언 등은 할 수 없다(우체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우체국은 단지 납세신고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주는 일을 대행해 줄 뿐이다). 만약 세무사의 조언 등으로 납세신고 내용이 바뀌었다면 납세자는 Tax Pack Express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ELS로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ELS가 세무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에만 전자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에 호주 국세청에서는 Tax Pack Express 보급을 통해 세무 대리인들을 이용하지 않는 혹은 세무 대리인의 수수료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개인 납세자들에게도 전자신고 서비스의 혜택을 주기 위해 이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Tax Pack Express 프로그램도 우체국 혹은 세무 대리인들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우체국과 세무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전자 전송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이러한 수수료는 납세 신고시 공제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호주 국세청에서는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면 전자적으로 납세신고가 가능하도록 e-BAS와 e-tax를 개발, 실시하고 있다.

3) e-BAS(electronic Business Activity Statement)

호주 연방정부는 2001년까지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표명에 의해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도 인터넷에 기반을 둔 ECI(Electronic Commerce Interface)를 구축하여 '호주 국세청의 모든 것(whole of ATO)'을 전자 정보화 하여 개인과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ECI는 인터넷을 통한 기업 또는 개인과 호주 국세청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연결 통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CI가 기업과 호주 국세청간의 다양한 세무행정 처리 및 납세 신고 등에 이용될 것이다. 이에 대한 초기 작업으로 e-BAS(electronic Business Activity Statement)를 시작하였다.

2000년 2월 처음으로 ECI e-BAS 실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금년 6월에 완성본이 발표되었으며 금년 8월에는 사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e-BAS를 발표함으로써 더 많은 이용자들이 호주 국세청 ECI를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고 있다. 참고로 연간 총거래액수가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BAS를 매달 전자적으로 호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세금 납부도 전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호주 국세청은 ECI 사용을 등록한 사업자들에게 무료로 ECI 프로그램과 전자 확인증을 제공하며, 납세자는 ECI를 이용하여 e-BAS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호주 국세청에 전송하고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BAS를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수취번호, 접수 날짜와 시간 등을 받는다.

ECI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호주 국세청은 납세자가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업적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를 ECI를 이용하여 호주 국세청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성공할 경우 납세자가 납세 신고를 위해 다시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과 이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안이다. 호주 국세청에서는 ECI에 Public Key Technology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보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Public

Key Technology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며 신원이 확인된 납세자에게 디지털 증명서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를 사용한다. 따라서 정보 수취인(호주 국세청)은 발송자(납세자)가 밝히는 신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상호간의 정보 교환시 제 3자가 이에 개입할 수 없으며, 오직 수취인만이 정보를 볼 수 있고, 발송자도 자신이 보낸 정보에 대해 그 내용을 나중에 부정할 수 없게 된다.

4) e-tax

e-tax는 호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인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1999)부터 실시되어 약 3만명의 개인 납세자가 이를 이용하였다. 현재 e-tax를 이용하여 이번 과세연도에도 약 20만명의 개인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리라 추산하고 있다.

개인 납세자가 e-tax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e-tax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e-tax는 화면상에서 납세자에게 개인 신상과 소득액,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과 해당액수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개인 납세자가 답변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도움말(Help file) 기능과 함께 인터넷상의 세금 관련 정보도 이용할 수 있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소득 및 공제 항목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납세자의 모든 자료 입력이 끝나면 e-tax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납세할 세액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주며 관련 납세신고 양식은 자동으로 호주 국세청에 신고된다. 또한 e-tax의 장점은 세금 환급도 14일이내에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면 신고를 한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42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에 비해 약 3배정도 빠르게 처리됨을 알 수 있다.

e-tax는 현재 납세신고번호(Tax File Number, 일종의 주민번호)가 배정되어 있는 개인 납세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번 과세연도에 처음으로 납세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e-tax를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처음으로 납세신고를 하는 납세자의 신분을 호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e-tax 프로그램은 실행 파일, 도움말 파일, 보안 파일 등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행 파일과 도움말 파일은 납세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안 파일은 개인 납세자당 하나씩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안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개인 납세자의 납세 신고 번호(TFN), 이름, 주소, 납세 고지서 발행 일자 및 발행 번호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안 파일의 기능은 납세자의 납세신고 내용을 암호화하여 인터넷상에서 안전하게 호주 국세청에 보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 납세자의 신분을 파악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개인 납세자의 신분이 확인된 후에 보안 파일을 통해 납세자의 전자서명을 부여받게 된다.

e-tax로 납세신고를 한 후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서면으로 오류에 관련된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밖에 e-tax 프로그램은 매년 보완되기 때문에 지난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 파일도 해당 과세연도에만 유효하다.

5) 전자신고 이용 현황

호주 국세청이 2000년 11월 17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73만 납세 신고 중에서 70%가 ELS를 이용하였으며, 3.6%가 우체국 등을 이용한 Tax Pack Express를, 1.7%가 e-tax를, 그 밖의 24.6%가 서면으로 납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전자 신고 이용 현황

(단위 : %)

신고 형식	신고 접수 건수	비율(%)
ELS	4,720,115	70.1
Tax Pack Express	240,782	3.6
e-tax	114,576	1.7
서면신고	1,654,389	24.6
전체	6,729,862	100.0

자료 : 호주 국세청(<http://www.ato.gov.au>).

6) 사적 비밀의 보장과 세무 감사

전자 신고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사적 비밀의 보장이다. 납세자들은 자신의 납세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호주 국세청에 전송하였을 때, 첫째, 다른 사람이 자신의 납세 정보를 도용하여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또한 이러한 전자 신고 제도로 인하여 둘째, 다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자신의 납세 신고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다.

이에 대해 호주 국세청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고 내역을 전송할 때 모든 납세자의 정보를 암호화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납세정보를 도용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남의 납세신고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호주 국세청에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납세신고번호(TFN)이외에도 납세 고지서 발행 일자 및 발행 번호가 적혀있는 납세 고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우편 발송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올바르게 입력된 이후에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전자신고로 인하여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불안은 전자신

고로 인하여 호주 국세청이 보다 자세히 세무 기록을 검색하여 세무 감사를 받기가 더 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이에 대해 호주 국세청의 답변은 서면신고와 똑같은 대우(No more, no less)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자신고를 할 경우 모든 과정이 세무 직원의 개입 없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 처리되기에 세금 환불도 14일이내에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고 홍보한다. 이는 서면 신고시 42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약 1/3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는 것이다.

나. 전자지불 시스템

호주 국세청은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전자지불시스템(Electronic Funds Transfer)을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Direct Credit, Direct Debit, BPAY 그리고 EFTPOS 등이 있다.

1) Direct Credit

Direct Credit은 국세청 은행계좌로 납부할 세금을 계좌 이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좌 이체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은행 시스템(Direct Entry System)을 이용하여 실행된다. Direct Credit을 이용할 경우 해당 지방 국세청의 은행계좌번호와 지방 국세청에서 발급한 전자지불 코드(Electronic Funds Transfer Code)가 필요하다. 전자지불코드는 해당 지방 국세청에서 각 개인에게 배정한 것으로 이 코드를 통하여 납세자의 신분을 파악하고 연계 은행계좌와 납부하고자 하는 세금의 종류(예를 들어 소득세, 소비세 따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Direct Debit

Direct Debit은 은행 혹은 관련 금융기관에서 부채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설명한 Direct Credit은 현재 세금을 납부할 액수 이상의 금액이 납세자 계좌에 잔고로 남아있어

이 계좌로부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Direct Debit은 그 만큼의 잔고가 없어도 대출(貸出)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Direct Debit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먼저 이에 대한 신청서(Direct Debit Request)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서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계좌로부터 세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Direct Debit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이름과 계좌 소유자의 이름이 동일하여야 한다.

3) BPAY

BPAY는 호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요금 고지서 전자지불서비스(Electronic Bill Payment Service)이다. BPAY를 이용하여 세금의 납부하기 위해서는 간편하게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전화(텔레뱅킹 혹은 폰뱅킹)나 인터넷(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세금고지서에 표시된 고지서 청구 번호(Biller Code)와 납세자의 전자지불코드(EFT Code)를 입력하면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해당 금액이 국세청으로 이체가 되며, 이체가 완료된 후에 거래완료를 증명하는 거래번호(Receipt Number)를 받게 되며 이 번호가 영수증의 역할을 한다. BPAY는 호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로 세금 납부 이외에도 전기, 전화, 가스 사용료 등 대부분의 고지서를 BPAY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0년 6월에 실시된 설문 조사에 의하면 납세자 중 약 20%가 BPAY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그 밖의 납세 방법

EFTPOS는 우체국에서 계좌이체를 대행하여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계좌에서

국세청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유사하며, 따라서 일일 현금인출한도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우편으로 수표나 우편환(Money Order)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있다면 우체국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호주에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 이는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호주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Merchant service fee)를 지불해야 되고 그만큼 세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신용카드회사와 호주 국세청 간의 수수료 면제 등의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 전자정보 서비스

1) 국세청의 인터넷 운영현황

호주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to.gov.au>)에 크게 ①개인 납세자, ②기업 납세자 그리고 ③전문 세무 대리인 등으로 나누어 이에 필요한 세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2000년 6월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77%이며, 79%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호주 국세청(ATO)의 홈페이지에 대해 납세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 개인 납세자

호주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납세신고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개인 납세자로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이번 과세연도 납세신고이다. 호주의 Tax Pack은 개인 납세자들이 납세신고를 할 때 필요로 하는 납세 신고서 양식과 설명책자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9> ATO 홈페이지 관련 설문 조사(2000년 6월)

질 문 사 항	비율
- ATO 홈페이지를 최소한 일회 방문했던 사람 중에서	
· 세급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ATO 홈페이지를 사용한다	57
· ATO 홈페이지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79
- ATO 홈페이지를 최소한 일회 방문하고, 필요한 정보를 구한 사람 중에서	
·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았다	77

자료 : Commissioner of Taxation, *Annual Report 1999~2000*
 (ATO, <http://www.ato.gov.au>).

이러한 Tax Pack은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구할 수도 있으나, 호주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이에 관련된 모든 정보(납세 신고서 양식, 각 항목의 설명 등)가 수록되어 있어 개인 납세자들이 시간을 내어 지정된 장소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다. Tax Pack 이용자의 87%가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되어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Tax Pack과 관련된 정보이외에도 많은 양의 일반적인 세금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납세와 관련하여, 세금 공제 및 환불, 세금 계산, 납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그리고 납세 신고 관련 문의 방법 등의 정보가 자세히 제공된다.

그밖에 개인 납세자가 새로 취업을 하여 납세 신고 번호(Tax File Number, 일종의 주민번호)가 필요한 경우, 또 다른 소득원이 생겼을 경우, 개인 사업을 시작할 경우, 직장을 그만둔 경우, 은퇴한 경우 등의 납세신고 요령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그밖에 개인 사정, 예를 들어 금전적, 건강상,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납세신고 혹은 납부가 어려울 경우, 또는 주소 변경, 결혼/이혼/별거, 입양 등으로 인해 납세신고가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나) 기업 납세자

기업 납세자에 대해서도 개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 공제 대상, 세금환급, 세금 계산 등의 세금 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확장할 경우 혹은 폐업할 경우, 고용원과 관련된 세금 문제, 수출입에 따른 과세문제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 전문 세무 대리인

전문 세무 대리인들을 위한 사이트에서는 전문적인 세금 관련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실제 문제점, 그리고 새로 개정된 세금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세제개혁(Tax Reform)에 따라 바뀌어진 세금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세무 대리인으로서 추가되는 의무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세무 대리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ELS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매년 추가되고 있다(2000 ELS Tax Agent Guide). 그 밖에 세무 대리인들간의 소식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법률 관련 데이터 베이스와 연계가 되어 있어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세관련 법률의 해석, 판례요약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2) 팩스를 이용한 세금 서비스(Fax from Tax)

팩스를 이용한 세금 서비스(Fax from Tax)는 소규모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위해 빠르고 편리하게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팩스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며 세금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팩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1998~1999 과세연도 기간중 19만장의 팩스가 전송되었으며, 사용 시기는 7월과 10월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전화 서비스(Call Center)

호주 국세청은 전국적인 전화 서비스를 통하여 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전화 상담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납세 신고 마감일) 사이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루에 약 17,000통 이상이며, 그 외의 기간 중에는 하루에 약 14,000통의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6월에 조사된 전화 상담 관련 설문 조사에서 대부분의 납세자가 호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화 상담원이 친절하다고 응답한 납세자가 90%에 이르고 있으며, 납세자가 전화 상담에 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67%에 이르고 있다.

<표 IV-10> 전화 상담 관련 설문 조사(2000년 6월)

(단위 : %)

질 문 사 항	비율
- 최근 12개월 이내에 전화 상담실(call centre)에 연락한 고객 중에서	
· 전화 상담에 만족했다	67
· 문제를 해결했다	76
· 전화 상담원이 친절하였다	90
· 전화 상담원이 도움이 되었다	79

자료 : Commissioner of Taxation, *Annual Report 1999~2000*
(ATO, <http://www.ato.gov.au>).

4) 그 밖의 서비스(전자기장)

호주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납세 의무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세금 관련 간행물로부터 간단한 세금 소개 팸플릿까지 여러 종류를 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발행물은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저장되어 있으며, 전화를 통해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 호주 국세청에서는 e-record 라는 호주 국세청에서 개발한 금전출납 프로그램을 소규모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e-record는 현금 거래를 기본으로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회계장부 기록에 의존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개발한 것이다.

따라서 호주 국세청의 궁극적인 목적은 e-record를 사용함으로써 현금 거래를 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서도 과세표준을 쉽게 찾아내기 위함이다. 또한 장부기록과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현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컴퓨터 기록은 세무 감사를 줄이고 납세자의 순응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 사업자가 e-record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e-record에 있는 내용들을 이용하면 쉽게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 또는 IAS(Instalment Activity Statement)를 작성할 수 있으며, 납세신고도 손쉽게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약 백만개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e-record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뉴질랜드의 전자세정

가. 개요

1998년 10월 뉴질랜드는 새로운 조세징수법('Taxation(Simplification and Other Remedial Matters) Act 1998(98/101)')을 제정·시행하였다. 이 법의 전자세정과 관련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1999년 4월부터 1년에 한 번씩 신고하던 고용자의 원천신고를 한달에 한

번씩 신고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가 처리하여야 할 불필요한 많은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연간 20만건에 달하는 원천징수 조정신고와 4.3백만건에 달하는 세액공제증명서(tax deduction certificate)의 처리과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뉴질랜드의 콜 센터(Call Centre)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문의에 신속·정확하게 대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행정서비스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1998년 3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1999년 4월에 완성하였고, 현재 잠정적으로는 다소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전자세정의 정착을 위하여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징수 측면뿐만 아니라 세무감사부분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순응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정보기술을 이용한 전자신고 제도(E-File)를 도입하여 징수 및 감사, 세무대리인 업무 등 조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전자세정을 시행하고 있다.

나. 근로소득 원천징수(PAYE: 즉시지불제도)

앞서 언급한 1998년 10월에 확정된 새로운 조세징수법의 주요 도입목적은 조세제도의 단순화이다. 동법 이전의 제도하에서는 약 120만명의 납세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서식 IR5에 의하여 신고하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과 세액공제 내역을 나타내는 세액공제증명서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었고 이러한 증명서 발급건수는 연간 20만건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조세징수법은 사용자의 이러한 의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법 조치는 1997년 12월에 정부토론자료로 제시된 ‘Simplifying Taxpayer Requirements’라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신고서식 IR5의 삭제와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순응 비용의 감소 등의 제안을 담고 있었다. 동 법은 수백만건에 이르는 세무신고의 처리로부터 뉴질랜드 국세청을 자유롭게 할 것이며, 기술의 진보 및 모든 납세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래에 조세행정이 부담하여야 할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와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러 가지 개정사항 중 가장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이전에 사용자(employer)가 한달에 2회씩 서면으로 원천징수사항을 국세청에 보고하던 것을 한달에 1회씩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뉴질랜드의 조세행정법에는 전자매체를 통한 신고방식을 도입하였다. 전자신고의 의무를 가진 사용자의 범위를 구분하고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 전자신고

뉴질랜드 조세행정법(1994)(Sec. 36A)(1998년 개정)의 개정에서는 전자신고를 통하여 월간신고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Sec. 36B의 면제조치를 받는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매체의 형태로 자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전자신고 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국세청에 의하여 제시되는 서식형태에 따라서 신고하여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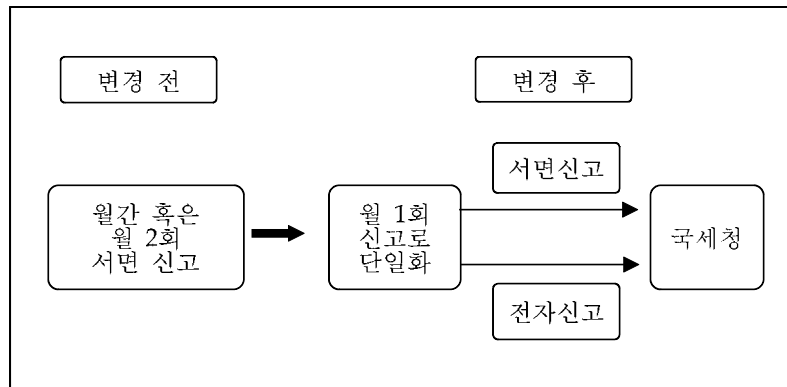
Sec. 36B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전자매체의 형태로 월간신고를

할 수 없는 회계시스템(account system)을 갖춘 사용자이다. 납세 순응 비용과 근로자 수는 사용자가 전자매체로 월간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주요 고려사항이다. Sec. 36B(2)(c)와 Sec. 36B(2)(d)에서는 전자매체를 통한 월간 신고를 면제받는 기준을 근로자 100명 혹은 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2000년 4월부터는 50인 이하의 근로자로 감소될 예정이다.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자신고의 형태를 보면 하나는 세무자료 자체를 파일로 전송하는 방식(electronic file transfer option)이고, 또 다른 방식은 전자신고 서식을 완성하여 파일의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completing an electronic form)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뉴질랜드 국세청의 웹사이트, 인터넷서비스 공여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connection) 및 사설 가상 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를 통하여 운영된다.

전자의 방식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그들이 이용하는 급여프로그램에 의하여 생성된 월간 파일을 전송하면 된다. 그리고 후자의 방식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log-on 후 화면에 나타난 서식을 완성하여 전송하면 되는데, 맨 처음 신고시에는 모든 근로자의 세부사항을 기입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그 다음 신고부터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그림 IV-1] 뉴질랜드의 새로운 세무신고 제도



일반적인 세부사항은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전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들에게도 본인이 원한다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조세행정법은 규정된 전자서식 형태로 신고를 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Sec. 139AA). 그러나 전자서식 형태의 신고를 면제받은 자는 가산세의 부과에서 제외된다. 가산세는 사용자가 월간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근로자 1인당 1달러와 250달러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라. 콜센터(Call Centre)¹⁶⁾

뉴질랜드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문의에 신속·정확하게 대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매체를 통한 세무신고와 더불어 콜센터 제도를 도입하였다. 뉴질랜드 전국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3개의 Personal Call Centre(PCC)와 1개의 Business Call Centre(BCC)를 운영하고 있다. PCC는 지역별로 주로 개인납세자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며, BCC는 주로 사업자 관련 세금문제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전화를 받고 있다. 전화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재화 및 서비스 조세(Goods and Service Tax), 체납 및 세무신고, 학생대부, 고용인, 일반 질문 등 각각 별도의 무료번호가 있어 납세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번호 선택하여 이용할 수가 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무료번호가 부여되며 뉴질랜드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CLID(Caller Line Identification)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의 전화는 개인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사적인 용무로 오는 전화는 전화기의 자동응답기로 옮겨지고 센터요원은 센터 내의 공중전화를

16) 홍범교, 『New Zealand Call Centre』,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 2000.

이용하여 전화를 걸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시차를 두고 조정하여 야간에도 고객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와 심하게 언쟁이 오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직원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휴게실까지도 마련하고 있다.

고객이 콜센터에 문의하고 응답을 얻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객이 무료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문의자에 관한 정보(SVOC: Single-View-Of-Customer)가 화면에 뜨게 된다. 문의자가 이전에도 전화를 한 경우가 있다면 지난번에 통화한 직원에게 연결한다. 그러나 직원이 통화중이거나 연결이 가능하지 않다면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다른 직원에게 연결을 해준다.

콜센터 내 직원들의 응답가능여부, 대기중인 고객의 수, 평균 대기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응답할 수 있는 현재 직원의 수와 실제 전화 문의 간의 비교 및 예상을 통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히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문의자의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의자에 대한 응답내용을 무작위로 녹취하여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해당 직원, 팀장 및 안내직원과 함께 대답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도 한다.

뉴질랜드의 콜센터 설립의 취지는 신속·정확할 뿐만 아니라 편리한 대민 서비스를 위한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조세행정업무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절감된 비용은 역시 네트워크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되돌려 줌으로써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마. 컴퓨터 세무조사(Computer Tax Audit)

컴퓨터를 통하거나 수록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세무신고를 준비하거나 전산화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이 점차로 증가함에 따라 뉴질랜드 국세청도 이러한 시스템을 가진 기업의 세무조사와 연관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보다 진보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국세청은 컴퓨터 세무조사를 위한 조직(CTA: Computer Tax Audit unit)을 개발하여 1995년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다.

CTA 조직은 Auckland, Wellington, Christchurch, Dunedin의 4개의 주요 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Wellington에서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CTA 조직의 조사요원은 국세청의 다른 조사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세무조사의 일부분으로써 컴퓨터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세무조사팀의 구성원은 납세자와 CTA 조사요원간의 연결을 담당하고, 보다 더 철저한 조사는 세무조사를 이끄는 CTA 조사요원에 의하여 수행된다.

1) 컴퓨터 세무조사의 형태

뉴질랜드 국세청은 두 가지의 컴퓨터 세무조사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시스템 조사(system audit)이고 또 하나는 파일 검사(file interrogations) 방식이다. 조사기술은 일반 PC부터 메인프레임까지 어떠한 컴퓨터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시스템 조사는 기업의 전체적인 시스템 평가와 세부적인 분석을 포함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총계정원장까지 어떻게 거래가 처리되는지 그 과정을 관찰하고 상세히 기록한다. 국세청에서는 일상의 업무지식을 잘 알고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의 직원과 상담을 하며, 또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개인에게도 자문을 제공한다. 상담과정에

서 기업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을 보여주는 플로우차트(flow chart)를 설계하고, 플로우차트는 상세한 명세와 함께 백업을 받아둔다. 조세목적에 위하여 평가하고 기록한 후, 국세청이 발견한 사항을 기업과 토의한다. 발견한 사항을 검증하기 위하여 CTA 조사요원은 다운로드된 자료에 대하여 질문한다. 또는 국세청이 상세한 세부 검토사항을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이 자체 조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행한 검증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한다.

파일검사 방식은 세부적으로 시스템을 검사하지 않고 단지 파일 검사만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의 컴퓨터로 저장된 계정의 자료를 다운로드한 다음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종합감사 소프트웨어(general audit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자료 분석은 주로 감사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자료분석에 있어 몇 가지의 공통적인 절차들이 있는 데 첫째, 자료의 확정된 크기, 거래의 분포 및 건수 등 자료의 개략(data profile)을 수집하고 둘째, 어떤 특정한 기준에 맞추어 record를 분류(sorting), 추출(extracting), 목록화(listing)하며 셋째, 표본을 추출(Sampling)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조사과정이 완료되면 뉴질랜드 국세청은 컴퓨터에서 납세자의 자료를 삭제한다.

2) 컴퓨터 세무감사의 장점

우선 효율성을 대표적인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조사요원이 원격지(off-site)에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기간 동안 일상의 업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조사요원은 기업의 전산화된 자료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서류복사본에 의존하거나 여타의 자료목록(data list)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사기업 대상 직원에 대한 요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수많은

프린트물에 의존하던 각종 정보에 대한 조사요원의 요구를 최소화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기록의 유지

법률에 의하여 기업의 자료는 유지·보관되어야 한다. 자료는 특별허가를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업의 세부담을 확정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국세청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세법은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정한 방식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세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가능한 한 포함하여야 한다. 전자매체를 통한 자료의 저장법이 출현하기 전에는 기업은 국세청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연속용지에 프린트하여 보관하고 있어야만 했다. 물론 현재도 일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만, 향후 정보기술의 발달은 자료를 전자매체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CTA의 기능 중에는 애초부터 자료를 전자매체로 저장하고 기록해 왔던 납세자들을 계속 독려하는 것과, 디스크나 테이프 혹은 여타의 전자매체의 형태로 자료를 유지·보관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은 뉴질랜드 국세청이 컴퓨터를 이용한 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면으로 자료를 유지·보관하던 전자매체의 형태로 유지·보관하던 기록은 7년간 유지되어야만 한다.

유지·보관되는 기록은 사업거래의 기록 외에도 컴퓨터 세무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추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첫째, 전자매체의 형태로 기타 분개장(other journals) 및 보조원장(subsidiary books of account)과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을 포함한 각 거래단계별 기록이나 회계장부 둘째, 계정과목 및 계정코드(the chart and codes of account), 회계처리지침(the accounting instruction

manual), 각 소득 연도에 이용된 회계처리방식을 설명하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대한 비치자료 셋째, 유지·보관되고 있는 모든 기록에 대한 레이아웃을 보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자체가 수정 및 개선되었을 때에는 구기록과 신기록의 레이아웃을 모두 보관하여야 한다.

4) 기술적 사항

뉴질랜드 국세청은 국세청내의 컴퓨터로 각종 기록을 다운로드하거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전자매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추천하고 있으며¹⁷⁾, 개인용 컴퓨터간의 케이블을 이용한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 제공되는 자료도 몇 가지의 형태를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 가능한 한 일정한 레코드의 크기를 갖고, 아스키(ASCII) 혹은 엠시딕(EBCDIC) 형태의 자료일 것
- 테이프 형태는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압축되지 않은 자료일 것, IBM 표준 레이블(label)이거나 레이블이 없을 것
- 백업 소유권이 없고 테이프 형태로 복사가 가능할 것
- 데이터가 어떻게 디스크(disk), 카트리지(cartridge) 혹은 테이프(tape)로 복사되는지를 나타내는 명세가 있어야만 하며, 테이프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레코드의 길이와 블록의 크기와 레코드에 관한 레이아웃(layout)도 요구됨

5) 보안문제

전자매체의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보안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이며 접근을 통제

17)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4mm DAT tapes, 8mm tape cartridges, 1/2 inch 9 track magnetic tape, CD-ROM, DLT Tape, 3 1/2 inch floppy disks, IBM 3840, Iomega Zip 100 Disks, TRAVAN Tape(TR1 Minicartridge), QIC80(Trakker) Tape 등이다.

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세법(The Revenue Acts)은 뉴질랜드 국세청 직원과 개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획득한 자들에게 엄격한 비밀보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새로운 보안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내국세에 관한 감사규정(Inland Revenue Audits)(IR 297)에 명시된 일반보안에 관한 규정을 컴퓨터를 기반으로하는 정보에까지 확대하였다.

바. E-File

E-File은 세무대리인(tax agent)이 자신들의 PC로부터 뉴질랜드 국세청의 메인프레임으로 직접 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송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의 소득세 신고서, 서신, 고객변동 사항, 고객변동 사항의 세부 내용(주소 등), 고정적인 주문사항(stationery orders) 등이다.

E-File을 이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스템의 사양은 아주 간단하다. MS-DOS을 탑재한 컴퓨터와 프린터, 뉴질랜드 국세청이 검증한 소프트웨어, 모뎀, PACNET 등록번호 등이다.

1) E-File의 장점

E-File을 이용한 자료의 전송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에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다 주는데 우선 세무대리인에게는

- 신고의 확정사항을 빨리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서신 및 세무대리인 관리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국세청에 빨리 전달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에 작성된 점검사항을 수정하는 데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준다.
- 과세확정 통지서(The Notice of Assessment)의 세부사항이 우편으로 전달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다.
- 환급액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으며, 만일 고객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경우에는 보다 빠를 수 있다.

- 교류비용 및 고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고객리스트를 전자통신을 통하여 쉽게 갱신할 수 있다. 이는 고객리스트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대리인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고객리스트를 유지 및 갱신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목표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진척사항을 모니터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납세자에게는

- 과세확정 통지서와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은행계정을 통한 환급 및 납부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

2) E-File의 사용법

세무대리인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신고서나 서식을 보낼 수 있다. 우선 PACNET 서비스에 전화 접속하여 사무소의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그리고 등록여부를 식별하기 위하여 E-File을 할 수 있는 지방국세청 및 지역의 번호를 입력한다. 그러면 PC는 전송된 자료를 수취하고 저장할 수 있는 국세청의 FEP(Front-End Processor) 컴퓨터에 연결된다. FEP는 일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송된 후에는 전송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준다. 세무대리인은 이를 읽기 위해서 FEP에 로그-온 하고 확인하면 된다.

V. 조세행정의 정책과제

정보기술의 발달은 향후 조세행정의 체계를 급격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을 조세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과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 중에서 전자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다.

1.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

정보기술의 보급이 급속도로 빨라짐에 따라 조세행정에서도 납세자들의 정보기술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전자신고제도의 도입과 함께 전자메일을 통한 신고가 향후 보편화될 전망이다. 전자신고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먼저 납세자 입장에서 정보기술에 대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신고가 납세순응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선 기존의 납세자들이 서면신고를 할 경우 자료입력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자료입력에 따른 오류비용, 잘못된 자료를 통한 통계자료 등과 같은 국세청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입력 오류, 통계치의 부정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납세자들의 전자신고제도는 납세자와 세무당국에게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제도이므로, 정책적으로도 적극적인 유인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정보기술이 점차로 발전함에 따라 전자신고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지만,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도 2002년부터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들에게는 10달러, 전화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는 5달러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신고에 대해 일정액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는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제도를 통해 일정액의 세수감소 효과를 가지게 되지만, 전자신고를 통한 조세행정비용의 감축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조세행정비용의 감소효과는 입력비용, 오류비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세수감소효과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세수감소를 통한 비용과 행정비용감소 및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비교하여,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신고제도는 2000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실시하는 초기단계에 있다. 그러나 국세행정체계가 전자신고제도를 바탕으로 한 과세자료 축적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국세행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문서를 통한 신고에 따른 비용 및 인적자원 관리 등은 국세행정 본연의 기능을 추진하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고려할 때, 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초기단계이지만 전자신고에 대한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전자세정의 정착을 빠르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보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국세의 부과와 납세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세무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1999년 말에 제정되었다¹⁸⁾. 이는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많은 과세관련 자료가 국세청과 공유되지 않아, 많은 행정비용을 지불하게 됨에 따라 이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국세청의 행정비용절감과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이다¹⁹⁾. 이 법률은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하나,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현행 법률안으로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가. 개인정보 보호와 과세자료와의 관계

국세행정에서 사용하는 과세자료는 기본적으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소득 및 지출과 관련된 정보로서 개인정보일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비밀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과세정보 확보와 개인정보 비밀과는 서로 상충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과세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정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각 부서에서 소장하고 있는 공공정보는 ‘공익을 위한 정보의 사용’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공공정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이며, 공공정보는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정보가 사회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비용

18)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부록 1>, <부록 2>에 수록하였다.

19)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국세청에서 부담하고 있었던 행정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진권(1998)을 참조하기 바란다.

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거꾸로 개인비밀보호라는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공공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비용의 증대 및 불투명한 사회조성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져다 주게 된다.

국가의 정책목표가 세워졌을 때 공공정보는 정책수단이 되므로, 이 정책수단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정보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자료관리의 소홀로 인해 누출되는 개인정보를 개인비밀보호라는 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누출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강도 높은 문책으로 누출위험을 최소화해야지 이러한 위험 때문에 공공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책수단이 정책목표에 우선하는 논리가 된다.

공공사용을 목적으로 한 과세자료의 확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②다른 법률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 부과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는 이 법에 의한다.

나. 과세자료에 대한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

현행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과세자료는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렇게 명시된 자료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궁극적으로 과세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소득 및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개별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관련 과세자료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과세자료는 매우 포괄적이므로 세무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경제 및 금융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과세자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 납세자에 대한 새로운 과세자료는 적시에 세무행정 에 응용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과세자료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과세자료가 새롭게 생길 경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조세행정 환경 속에서 과세자료가 적시에 활용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새로운 과세자료를 탄력적으로 적시에 조세행정 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시행령이 아닌 재정경제부령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현행 시행령>

제3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①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 (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 명, 제출 받을 세무관서 및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시행령>

- 제3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①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명, 제출 받을 세무관서 및 제출시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②법 제5조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장 훈령으로 정한다

3. 추가적인 과세자료의 확보: 인별 전화번호 자료

납세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국세행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납세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본인의 신고,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수집, 과세자료 발생처로부터의 수집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불성실한 납세자들의 위치에 대한 정보의 확보는 세무공무원의 현장수집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행정비용이 높고 그 효과성도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담당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개별출장이 금지되었으므로 특정 납세자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전화는 거의 모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통신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모두 정부에서 무료로 전화를 설치해 주므로 전화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가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약 1,700만 가구이며, 유선전화 2,058만개, 무선전화 2,156만개 총 4,214만개로 가구 당 2개 이상의 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별 납세자들에 대한 전화번호 정보를 세무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조세행정의 행정비용을 낮출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전화번호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이다. 전화사업 경영자는 전화가입자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익을 위한 과세자료의 활용이란 목적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세자료 활용이란 목적이 우선 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는 담당 공무원에 의한 정보누출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화번호 정보를 국세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제4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①항 제1호에 규정한 전기통신사업자(제3호 개정)

제6조의 1 【전화번호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①국세청장(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①항 제1호에 규정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정업무상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 본인 또는 관련인의 전화번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방법은 국세청장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통신라인에 의하고 회신을 요구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즉시 그 요구받은 자료를 통신라인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회신하여야 한다(제6조의 1 신설).

4. 추가적인 과세자료의 확보: 공공부문의 지출자료

세무행정에서 과세기반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소비지출건에 대한 자료가 모두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기반하에서 세무조사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지출건에 대한 자료는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정규 영수증을 근거로 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에서 파악할 방법이 없다. 민간부문의 상거래를 세무행정 전산망에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소득공제제도, 복권도입 등 여러 가지의 정책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소비지출의 구조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정도이다. 공공부문의 소비지출에 대해서는 1999년 4월에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도록 의무화하였으므로 과세기반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규 영수증의 수취만으로는 과세기반의 투명성 확보를 이룰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 수취한 영수증 자료는 국세행정전산망에 구축되어야 공공부문과 거래하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에 대한 상호대사가 가능한 것이다. 1999년 및 2000년 동안에 공공부문 중에서 지방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출 영수증을 세무당국에 제공토록 의무화하였으므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출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 회계업무 지침인 ‘지출관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출에 있어서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자료는 투명한 과세 기반 확보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시급히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를 상대로 거래한 지출에 대해 민간에서 탈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도덕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V-1> 공공부문의 소비지출 구조

(단위 : 조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¹⁾
최종소비지출	112.2	135.9	156.5	177.5	208.8	242.8	276.1	300.6	299.3
민 간	93.5	113.2	130.0	148.3	176.0	206.4	233.6	255.0	250.3
(비 중)	83.3	83.3	83.1	83.5	84.3	85.0	84.6	84.8	83.6
정 부	18.7	22.7	26.5	29.2	32.9	36.4	42.5	45.7	48.9
(비 중)	16.7	16.7	16.9	16.5	15.7	15.0	15.4	15.2	16.4

주 : 1) 잠정치.

1. 경상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9.

VI. 결 론

우리나라 조세행정에서 정보기술의 본격적인 도입은 국세통합전산망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투자가 시작된 1995년 이후로 볼 수 있다. 정보기술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1976년부터 1997년까지 22년간의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국세행정의 투입요소와 생산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징세비 측면에서는 정보기술로 인해 징세비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국세행정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간의 관계를 통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로 인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보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국세통합시스템의 도입(1997년), 국세행정개혁(1999년), 그리고 전지신고 및 전자납부의 부분적인 시행(2000년) 등 향후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한 자료가 보완되면 분석결과에서도 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부터 추진 중인 국세행정개혁안은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조세행정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복권제 도입과 체납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과표양성화 및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행위를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보여주었다. 국세통합전산망과 함께 전지신고, 전자납부 등의 도입은 향후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조세행정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투명성의 확보이다. 아울러 정보기술로 인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세무당국의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정보기술은 조세행정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므로 대폭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정보기술 및 정보화로 인한 조세행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납세자별 소득 및 지출정보에 대한 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에 앞서 납세자들의 과세관련 정보는 모두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납세자들의 거래 관행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는 환경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요건은 이미 추진 중이므로 세무당국의 납세자별 과세 관련자료의 확보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1999년 말에 제정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안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자료로써 인별 전화번호자료 및 공공부문의 지출자료를 들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속도에 비례하여 조세행정의 체계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기술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개별 납세자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이 계좌를 통해 모든 소득 및 지출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자별로 여러 가지 소득과 개별물품에 대한 지출이 세무당국의 전산망에 입력될 것이므로 투명한 과세기반을 토대로 하는 납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보기술 및 정보화를 통해 투명한 과세기반을 완전히 달성한 후에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거의 없어도 조세행정체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납세협력비용도 대폭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

라 세무당국의 인적자원은 모두 세무조사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고 세무조사의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세행정에서 지방세 행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향후 지방세 행정에서 정보기술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곽태원,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4-08, 한국조세연구원, 1994.
- 국세청, 『국세청 30년사』, 1996.
- _____,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노영훈·홍범교·연태훈,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지원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
- 문춘걸·나성린, 「요인분석에 의거한 국가별 정보화지수의 측정」, 『응용경제』, 한국응용경제학회, 1999.
- 여신금융협회, <http://www.kla.or.kr/>.
- 재정경제부, 『결산개요』, 각 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9.
- 한국전산원, 『1997년 국가정보화 백서』, 1997.
- 현진권, 「과세정보관리체계의 개편방향」, 현진권(편),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연구논문집 98-01, 한국조세연구원, 1998.
- _____, 김정훈, 김재진, 이철인, 『세무분야 부패방지 대책』, 한국조세연구원, 1999.
- _____, 문춘걸, 「국세행정의 생산관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6권 제1호, 한국경제의 분석페널, 한국금융연구원, 2000.
- _____, 윤건영,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조세개혁의 방향모색: 한국과 미국』, 연구논문집, 한국조세연구원, 1999.
- 홍범교, 「New Zealand Call Centre」, 한국조세연구원 내부자료, 2000.

- ATO, <http://www.ato.gov.au/>.
- Commissioner of Taxation, Annual Report 1999~2000, ATO(<http://www.ato.gov.au>).
- Allingham, M. and A. Sandmo,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72.
- Alm, James, "Tax Compliance and Administration," W. Barttey Hildreth and James Richardson(eds), *Handbook of Taxation*, 1999.
- Baldwin, John, "Evolving Taxpayer Information System," *State Tax Notes*, April 8, 1996.
- Bird, Richard, "Tax Administration and Tax Reform: Reflections on Experience," J. Khalilzadeh-Shirazi and Anwar Shah(eds.), *Tax Policy in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 C.: The World Bank, 1991.
- Bonnett, Thomas, "Technological Change and Tax Policy: The Future of State and Local Tax Structures," *Government Finance Review*, December 1998.
- Fox, William(ed.), *Sales Tax in the 21st Century*, Praeger, 1997.
- Hansen, L., "Large sample properties of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s," *Econometrica* 50, 1982.
- Hunter, W. and M. Nelson, "An IRS production function," *National Tax Journal* 49(1), March, 1996.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99.
- Internet Industry Almanac, *Computer Industry Almanac Inc.*
- IRD, <http://www.ird.govt.nz/menu.htm>.
- IRS, *Electronic Tax Administration - A Strategy for*

Growth, 1999.

_____, http://www.irs.gov/tax_stats/soi/other_nr.html.

James, Simon and Ian Wallschutzky, "The Shape of Future Tax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May, 1995.

Jenkins, Glenn(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Tax Adminis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NUA Internet Survey(<http://www.nua.net/surveys>).

Powell, A.A. and F.H.G. Gruen, "The 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Frontier and Linear Supply System,"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9, 1968.

Tanzi, Vito and Anthony Pellechio, "The Reform of Tax Administration," IMF Working Paper 95/22, 1995.

부록 I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6074호 신규제정 1999.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과세자료의 제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말한다.
2. “과세자료”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4.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기타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의하여 보고받은 영업·판매·생산·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보험급여·공제금 등의 지급현황 및 제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원·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중 중앙행정기관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관련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이하 “세무관서”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활용시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요청)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에게 당해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① 국세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이 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관리 및 활용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관리·활용과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①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과세자료 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① 세무관서의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과세자료(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금융거래정보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단서 및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관서의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 ①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그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2.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 등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3.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4. 과세자료제출기관 및 과세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활용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로 정한다.

제13조(벌칙) 제11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벌칙) 제11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를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부록 II: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3. 공연법에 의한 영상물 등급위원회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7. 변호사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8. 법무사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9.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회
10.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11.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회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제3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세무관서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질문·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때

④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과세자료의 추가·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이하 “과세자료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2.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3.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8인
 - 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 나. 금융기관의 임·직원
 -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 라. 기타 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③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자료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⑤ 간사는 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직원 등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세자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Ⅲ :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3조 관련)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1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할 세무서	당해 과세기간종료 후 25일 이내
2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관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3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관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관	관계법률에 의한 보조금(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및 동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보조금을 말한다)의 교부에 관한 자료(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를 제외한다)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5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	농림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8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모자보건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는 경비(동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및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는 경비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기관	제출시기
9	건설교통부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자료 중 주택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2월 말일
10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에 관한 자료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에 관한 자료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한 자료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준용하는 동 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11	증권선물위원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국세청	수시
12	병무청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 및 그 친권자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13	특허청	가. 특허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나. 실용신안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다. 의장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라. 상표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14	교육청	가.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나.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15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도서·연속간행물·음반·비디오물 등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16	지방해양수산청	도선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이용료의 정수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17	지방해양수산청	선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5월 31일
18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19	광업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동항 제34호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광업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20	세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21	세관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및 수입신고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월 10일
22	체신청	방송법 제9조 제2항·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재허가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23	우체국	우표의 판매자료(우표 매수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국내판매인에 한함)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24	직업안정기관	고용보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25	경찰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공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상황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26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는 선거비용의 지출명세에 관한 자료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료(지출금액이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의 제작비용 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제작비용 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인쇄물 의 제작비용	관 할 세무서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27	법원행정처	소송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28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5월 31일
29	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자료 중 폐기물처리업자의 실적보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3월 31일
30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허가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31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산림법 제9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32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33	지방자치단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34	지방자치단체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에 관한 자료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35	지방자치단체	어선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5월 31일
36	지방자치단체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 등의 채취허가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37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조례에 의하여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한다)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38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39	지방자치단체	가. 산림법 제9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나. 산림법 제90조의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굴취·채취에 관한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0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주택 및 고급선박의 취득세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1	지방자치단체	가. 광업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권의 설정인가에 관한 자료 나. 광업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2	지방자치단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3	지방자치단체	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4	지방자치단체	가.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고에 관한 자료 나.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자동차의 판매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5	지방자치단체	삭도·레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 또는 레도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46	지방자치단체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자료 나. 화물유통촉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7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 의료보호비용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48	지방자치단체	가.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계약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자료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에 관한 자료 다. 외국인토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49	지방자치단체	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축 및 식육의 검사에 관한 자료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50	지방자치단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부터 동 조 제1호의 업무를 위탁 받은 협회 또는 단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51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인지판매에 관한 자료(수입인지의 연간 매수대금이 1억 원 이상인 판매인에 관한 자료에 한한다)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 세 자 료 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52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 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료에 한한다. 이하 나목 내지 라목에서 같다)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주식 등의 취득 신고에 관한 자료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53	건설교통부(건설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 촉진 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항 제3호의 권한을 해외건설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외건설 협회를 말한다)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	국세청	매년 3월 31일
54	소방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 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 안전협회	소방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중 소방시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3월 31일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55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제32조 제2항 제6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업자 단체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공사업자의 전년도 전기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3월 31일
56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정기보고의 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석유사업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 중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57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동항 제2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공사업자의 전년도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3월 31일
5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동항 제1호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건설업자의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3월 31일
5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체(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60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 중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6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가.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포함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나. 도시개발법 제40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6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도시재개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6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64	공연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음반·외국비디오물 또는 외국게임물의 수입추천 등에 관한 자료 나. 공연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변경사항에 관한 추천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다. 영화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6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66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비 등 임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4월 30일
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 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68	변호사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수임사건의 경우건수 현황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69	법무사법에 의한 지방법무사회	법무사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3월 31일
70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회	관세사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71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수수의 징수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72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회	세무사의 수임실적에 따른 회비의 납부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7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각호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자료(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대금결제에 관한 자료에 한한다)	국세청	매일
7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손해보험사업자를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중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관 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번호	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제출시기
7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사업자(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손해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7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제사업중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공제사업중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7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금융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지로를 이용하여 급전을 지급받은 자의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79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자(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포함된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 변동에 관한 자료 나.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관할 세무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비고: 제1호 내지 제79호에 규정된 과세자료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10일인 경우: 전월의 과세자료분
2.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인 경우인 경우: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3.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말일인 경우인 경우: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4.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인 경우: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5.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인 경우: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6.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5월 31일인 경우: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7.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인 경우: 당해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월의 과세자료분
8.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및 10월 31일인 경우: 당해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월의 과세자료분

<국문요약>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세행정의 변화

현진권, 정재호

조세행정의 전략적 목표는 세무당국과 납세자간에 서로에 대한 정보를 갖추도록 하되 정보를 갖는데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세무당국이 납세자별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어 행정비용이 낮아야 하고, 또한 납세자들이 조세제도 및 행정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납세협력비용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정보기술의 도입이다.

우리나라 조세행정에서 정보기술의 본격적인 도입은 국세 통합 전산망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투자가 시작된 1995년 이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자료(1976~1997)를 사용하여 국세행정의 투입요소와 생산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징세비 측면에서는 정보기술로 인해 징세비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국세행정의 생산관계를 통한 분석결과, 기술개발로 인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정보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향후 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부터 추진 중인 국세행정개혁안은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조세행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도입과 체납자의 정보공개는 과표양성화 및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행위를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보여주었다. 국세통합전산망과 합

계 전자신고, 전자납부 등의 도입은 향후 국세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조세행정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투명성의 확보이다. 정보기술은 조세행정의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과세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므로 대폭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정보기술 및 정보화의 도입과 함께 조세행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무당국의 납세자별 소득 및 지출정보에 대한 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에 앞서 납세자들의 과세관련 정보는 모두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납세자들의 거래관행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는 환경의 정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요건은 이미 추진 중이므로, 세무당국에서 납세자별 과세관련자료 확보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1999년 말에 제정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안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대표적인 자료로서 인별 전화번호 자료 및 공공부문의 지출자료를 들 수 있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Change in Tax Administration

Jin-Kwon Hyun, Jae-ho Cheung

A strategic approach in tax administration is to have a symmetric availability of information between taxpayers and the tax authorities, with minimal social cost. Tax authorities should pay a low cost to collect all information about taxpayers' income and expenditures. Furthermore, taxpayers should pay a low compliance cost for tax law.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one of the most efficient ways to reduce both costs, called social cost.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into tax administration, since Tax Integrated System was established in 1995. Having examine the trends of input factors and productivity in tax administration in a time series data, (1976-1997). We find that collection cost was reduced due to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to tax administration. However, our empirical analysis of the production relationship between input factors and output in tax administration, does not show a statistical significance resulting from the effec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is expected that 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the productivity of tax administration will increase, as time passes.

Dramatic reform in tax administration, which began in 1999, includes the 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various areas of tax administration. Several examples, like an incentiv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lottery system for the use of credit cards, information disclosure for delinquent taxpayers. These are effective policy tools to achieve voluntary compliance by taxpayers and transparent tax bases. Moreover, electric filing and payment will be a powerful tool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with the Tax Integrated System.

As tax administration can achieve transparency with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much invest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is needed.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in tax administration is that the tax authority should collect all information about taxpayers's incomes and expenditures. Thus such information should be automatically reported to the tax authority. Tax codes enacted in 1999 reflect this motivation, and are highly evaluated for the success of dramatic reform in tax administration. However, there is more information that these codes should include, to obtain the complete information about taxpayers. Examples are telephone numbers for each taxpayer, and detailed information about expenditure by the public sector.